

再活專門人力의 現況과
資格制度 導入方案

權善進
尹相龍
金美淑
趙貞潤

韓國保健社會研究院

머리말

障̄碍人福̄祉의 기본이념인 장애인에 대한 완전한 社̄會統̄合과 機̄會均̄等은 장애인의 효과적인 재활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障̄碍를 가진 한 개인이 社̄會生̄活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장벽의 철폐는 물론이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障̄碍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와 이에 적합한 재활서비스의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障̄碍人福̄祉는 양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크게 확충되어 왔다. 이와 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社̄會統̄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활서비스 수요자로서 장애인은 醫̄療, 職̄業, 教̄育, 社̄會心̄理再̄活 등 다양한 재활영역에 걸쳐 적절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 공급자로서 재활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再̄活專̄門人̄力의 경우 대부분이 공식적인 양성과정과 공인된 資̄格制̄度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再̄活專̄門人̄力의 양성과정, 취업실태, 자격제도 등에 걸쳐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의 성과를 좌우하는 재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제도 확립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질 높은 再̄活政̄策方̄案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그

동안 분류체계와 공식명칭조차 확정되지 못하는 등 기초연구가 매우 빈약했던 우리나라 再活專門人力에 관하여 본 연구가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분석결과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본 研究報告書가 장애인 재활서비스 증진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또는 장애인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일독을 권하고 싶다.

본 보고서는 우리 研究院의 權善進 책임연구원의 책임 하에 金美淑 책임연구원, 尹相龍 주임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趙貞潤 박사 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研究陣들은 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준 保健福祉部 양인순 과장, 이기일 사무관, 조향현 선생,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대구대학교의 권혁철 교수, 아울러 再活專門人力 현황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여 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보장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등의 관계자 여러 분께 사의를 표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본 報告書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 준 본 연구원의 문현상 연구위원과 변재관 책임연구원, 본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보고서의 편집에 많은 수고를 해준 손숙자 연구조원과 外國資料를 정리해준 배화옥 주임연구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본 報告書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研究陣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研究院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8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目 次

要約	9
I. 序 論	23
1. 研究의 意義 및 必要性	23
2. 研究目的	24
3. 研究方法	25
II. 國內 再活專門人力 現況	27
1. 醫療再活	28
2. 教育再活	62
3. 職業再活	68
4. 社會·心理再活	77
III. 外國의 專門人力 養成 및 資格制度	102
1. 美國	102
2. 日本	123
3. 外國 制度의 示唆點	132
IV. 資格制度 類型과 再活專門人力	134
1. 資格制度의 類型	134
2. 國家資格制度의 現況	138
3. 再活專門人力의 國家資格制度 導入을 위한 檢討	147
V. 再活專門人力 養成을 위한 政策方案	159
1. 基本方向	159
2. 專門人力 養成體系의 確立	159
參考文獻	164
附錄	167

表 目 次

〈表 II- 1〉 再活醫學專攻醫 修鍊機關 및 修鍊現況	29
〈表 II- 2〉 最近 5年間の 再活醫學專門醫 免許取得者 推移	31
〈表 II- 3〉 再活醫學專門醫 數 國際比較	32
〈表 II- 4〉 再活醫學專門醫 就業 現況	33
〈表 II- 5〉 中長期 再活醫學專門醫 需給 推計	34
〈表 II- 6〉 物理治療士 養成 教育機關 및 入學定員	36
〈表 II- 7〉 最近 5年間の 物理治療士 免許取得者 年次 推移	37
〈表 II- 8〉 物理治療士 數 國際 比較	38
〈表 II- 9〉 物理治療士 就業 現況	39
〈表 II-10〉 中長期 物理治療士 需給 推計	40
〈表 II-11〉 作業治療士 養成過程 現況	42
〈表 II-12〉 最近 5年間の 作業治療士 免許取得者 推移	43
〈表 II-13〉 作業治療士 免許取得者 數 國際 比較	43
〈表 II-14〉 作業治療室 開設 現況	44
〈表 II-15〉 作業治療士 就業 現況	45
〈表 II-16〉 中長期 作業治療士 需給 推計	46
〈表 II-17〉 障碍人 補裝具 需要 推定(1995年)	50
〈表 II-18〉 補助器·義肢技士 需要 推定	51
〈表 II-19〉 言語治療士 養成機關 現況	53
〈表 II-20〉 學會 主管 資格證 所持者 數	54
〈表 II-21〉 言語治療臨床家 資格 規定	55
〈表 II-22〉 言語治療室의 機關別 分布	56

〈表 II-23〉	言語障碍人の 現況	57
〈表 II-24〉	言語治療士 數 國際比較	57
〈表 II-25〉	聽覺臨床家 養成過程 現況	59
〈表 II-26〉	聽覺臨床家 資格 規定	60
〈表 II-27〉	聽覺障碍人の 現況	62
〈表 II-28〉	特殊教育 教師 養成大學 및 入學定員	64
〈表 II-29〉	特殊教育教師 資格 規定	65
〈表 II-30〉	特殊學校 現況	66
〈表 II-31〉	特殊學級 現況	67
〈表 II-32〉	特殊教育對象者 特殊教育受惠 現況	67
〈表 II-33〉	韓國과 日本의 特殊學校教師 數 比較	68
〈表 II-34〉	職業生活相談員 養成過程	70
〈表 II-35〉	職業生活常談員 養成現況	72
〈表 II-36〉	國內 職業再活 關聯機關 現況	76
〈表 II-37〉	點譯士 資格制度 概要	79
〈表 II-38〉	國內 點字圖書館 現況	80
〈表 II-39〉	點譯士 需要階層	81
〈表 II-40〉	步行訓練士 講習會 實施 現況	83
〈表 II-41〉	步行訓練士 需要階層	84
〈表 II-42〉	手話通譯士 資格制度 概要	87
〈表 II-43〉	手話通譯士 需要階層	90
〈表 II-44〉	再活體育指導者 養成機關 現況	92
〈表 II-45〉	障碍人生活體育指導者 講習會 修了者 職業 現況	92
〈表 II-46〉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養成過程 現況	96
〈表 II-47〉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資格 規定	97
〈表 II-48〉	韓國과 美國의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數 比較	99

〈表 II-49〉 國內 再活專門人力の 概要	100
〈表 III- 1〉 美國의 再活專門人力 概要	120
〈表 III- 2〉 日本의 再活專門人力 概要	131
〈表 IV- 1〉 資格制度의 類型區分	137
〈表 IV- 2〉 分類基準에 따른 國家資格의 現況	139
〈表 IV- 3〉 主務部處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141
〈表 IV- 4〉 職務分野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143
〈表 IV- 5〉 國家資格의 應試資格 中 學歷要件 有無	144
〈表 IV- 6〉 國家資格의 試驗制度 有無 現況	145
〈表 IV- 7〉 國家資格의 等級 有無	145
〈表 IV- 8〉 國家資格 等級의 種類	146
〈表 V- 1〉 現行 再活專門人力の 資格制度 概要	161

圖 目 次

[圖 IV-1] 資格制度의 過程	134
-------------------------	-----

附 表 目 次

〈附表 1〉 主務部處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169
〈附表 2〉 職務分野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173

要 約

I.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 障礙人이 자신의 身體的·精神的 障礙를 극복하고 완전한 社會參與를 이루기 위해서는 醫療, 教育, 職業, 社會心理 등 각 재활영역별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성에 기초한 적절한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이러한 전문가들은 통상 再活專門人力으로 지칭되며, 현재 국내에는 대략 15개의 재활전문직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재활전문인력은 장애인의 재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서 그 역할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활전문직종이 體系的인 養成課程과 公認된 資格制度를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양성과정과 자격제도면에서 직종간 偏差가 심하고, 직종의 공식적인 名稱과 分類體系, 자격에 관한 法的 根據 등도 미비되어 있어서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당수의 非專門人力들이 실제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재활전문인력의 現況과 問題點을 분석하고 外國의 專門人力 養成制度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재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國內 再活專門人力 現況

1. 醫療再活

- 再活醫學專門醫는 의료재활분야의 핵심인력으로서 1983년 專門醫 자격시험에 재활의학전문가가 처음 도입된 이후 1998년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76명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1998년 현재 재활의학전문의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57개이며, 再活醫學專攻醫 수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物理治療士는 열, 광선, 전기 및 각종 기구들을 사용하여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차적인 畸形이나 殘存能力 손실이 뒤따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醫療再活 분야의 필수인력임.
 - 1998년 현재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총 31개교, 입학정원은 1,720명으로서 '9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1965년 醫療技士法에 근거하여 물리치료사 國家資格試驗이 처음 도입된 이후 1998년 현재까지 물리치료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13,035명임.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자격취득자 수는 물리치료사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때 미국, 일본 등 주요 先進國보다 많은 수준으로서 공급과잉 상태에 있음.
- 作業治療士는 여러 가지 흥미롭고 목적있는 작업이나 동작, 놀이를 통해 장애인의 불완전한 身體機能을 회복시키고 일에 대한 動機를 부여하여 장애인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獨立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의료재활 분야의 필수인력임.
 - 1998년 현재 作業治療士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 곳에 불과함.

- 1965년 醫療技士法에 근거하여 작업치료사 국가자격시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 1998년 현재까지 作業治療士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총 372명에 불과함. 우리나라의 작업치료사 자격취득자 수는 물리치료사와는 정반대로 주요 先進國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며, 이는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작업치료사 양성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임.
- 義肢·補助器技士(보장구기사)는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보장구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전문가이나 의료재활 분야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직종임.
 - 1998년 현재 義肢·補助器技士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전문대학인 대구미래대학 한 곳에 불과함. 1997년 현재 약 460~600명으로 추정되는 의지·보조기기사 중 대부분은 補裝具 제작업체에서 徒弟式으로 양성되어 왔음.
 - 보장구기사에 관한 자격은 민간자격으로서 韓國補裝具協會가 주관하고 있으나 단순히 경력만으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어 대외적인 공신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음.
- 言語治療士는 언어장애인의 잠재되어 있는 언어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고 意思疏通 기술을 습득케 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정상적인 言語發達을 유도하는 전문인력임.
 - 1998년 현재 4개 대학(원)에 言語治療士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며, 언어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약 67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언어치료사에 관한 자격은 民間資格으로서 그 동안 기존 언어치료 관련 두 학회에서 별도로 자격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두 학회가 공동으로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 專門家로서의 위상 확보 및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聽覺臨床家は 청각장애인의 청력손실정도를 진단하고 잔존 청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전문인력임.
 - 1997년 한림대학교 대학원에 聽覺臨床家 양성과정이 설치되었으나, 배출된 인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청각임상가에 준하는 역할을 했던 인력은 聽力檢査者, 聽能訓練士, 보청기전문가들로서 현재 약 55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聽覺臨床家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자격제도도 없었으나, 최근 韓國言語聽覺臨床學會에서 청각임상가 자격규정을 신설하여 1999년 2월에 제1회 자격시험이 치루어질 예정임.

2. 教育再活

- 特殊教育教師는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핵심적인 재활전문인력임.
 - 1998년 현재 特殊教育學科가 설치된 10개 대학교에서 매년 약 350명의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으며, 國家資格으로서 특수교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特殊教育教師는 특수학교 교사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1998년 현재 특수학교 교사는 4,153명, 특수학급 교사는 3,74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障礙兒童 가운데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21.6%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국내 特殊教育教師의 수는 매우 부족한 수준임.

3. 職業再活

- 職業生活相談員은 장애인이 10인 이상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雇傭管理와 직장내 생활상담 지도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으로서 1998년 현재 총 57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음.
 - 障礙人雇傭促進法에 근거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 대상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2주간의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수료자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으나 외국의 직업재활전문인력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전문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職業評價士는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직업재활영역의 핵심적인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養成過程이나 資格制度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음.
- 職業訓練教師는 장애인에게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여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는 전문인력으로서 國家資格制度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현재 654개소의 장애인 직업훈련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업훈련교사는 약 2,190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職業再活相談士는 1991년에 결성된 韓國職業再活學會가 운영하는 직업생활상담사 자격에 근거한 전문인력이나 직업평가사나 직업훈련교사와 달리 명칭과 기능면에서 분명치 않으며, 1998년 현재 한국직업재활학회의 직업생활상담사 자격취득자는 약 150명 정도임.

4. 社會心理再活

- 點譯士는 일반문자로 구성된 자료나 책을 視覺障礙人의 문자인 點字로 번역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각종 도서와 정보를 자유롭게 편리하게 취득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으로서 컴퓨터 점역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과거에 비해 수요가 높지는 않으나 수학이나 과학분야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인력임.
 - 점역사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없으며, 그 대신 盲學校나 점자출판 관련 기관에서 도제식 교육으로 점역사를 양성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는 한국맹인복지연합회에 點譯士 養成過程이 설치되었음. 아울러 민간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1998년 현재 43명이 점역사 자격을 취득하였음.
- 步行訓練士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재활센터나 학교, 직장 등에서 보행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전문인력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재활목표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임을 볼 때, 步行訓練士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보행훈련사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없으며, 대신에 韓國 視覺障礙人福祉財團에서 1973년 이래 부정기적으로 보행훈련사 양성 강습회를 실시하여 오다가 1990년부터는 연 1회 일주일의 일정으로 정기적인 강습회가 진행되고 있음. 현재 보행훈련사에 관한 자격제도는 미비되어 있는 실정임.
 - 매년 講習會를 통해 평균 12~13명의 보행훈련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전문성의 결여와 낮은 대우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아 현재 視覺障礙人 재활 관련 기관에서 보행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약 20여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음.

- 手話通譯士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手話를 통하여 청각장애인이나 그 관계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해줌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임.
 - 手話通譯士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없으며, 대신에 청각장애인관련 단체나 대학 수화동아리 등을 통해서 수화통역사가 양성되고 있음.
 - 1997년부터 韓國聾啞人協會 주관으로 민간자격제도가 시행중이며, 1998년 현재 총 143명이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이 외에도 현장에서 手話通譯士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再活體育指導者는 장애인에게 각종 체육활동을 지도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건강과 체력의 감퇴를 예방해주며,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전문인력임.
 - 1998년 현재 再活體育(特殊體育)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3개 대학과 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를 통해서 재활체육지도자가 배출되고 있음.
 - 현재 再活體育指導者에 관한 자격은 없으며, 체육을 지도하는 특수교육교사 자격과 장애인생활체육회 강습회 이수자에게 주어지는 修了證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나 재활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은 부족한 실정임.

- 治療레크리에이션指導者는 장애인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족한 기능을 회복시키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활전문인력임.
 - 현재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과정은 없

으며, 대신에 韓國治療레크리에이션協會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1,500여 명이 수료하였음. 아울러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현재 263명의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배출되었음.

Ⅲ. 外國의 再活專門人力 養成과 資格制度 現況

- 美國의 재활전문인력은 재활선진국답게 직종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학력과 기능수준이 높으며, 양성과정과 사후 자격관리를 위한 교육 등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이나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음.
 - 美國의 재활전문인력은 의료, 교육, 직업 등 재활영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視覺이나 聽覺障礙와 같이 장애유형별로도 체계화되어 있어 분류가 용이함.
- 資格檢定이나 교육제도의 특성상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중앙정부 보다는 직종별 專門職協會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는 기본적으로 각 전문협회가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서 각 협회는 엄격한 資格檢定과 管理는 물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음.
- 日本의 再活專門人力은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보다는 앞서 있지만 美國의 수준에는 못 미침.
 - 再活專門人力에 대한 資格體系에 있어서 현재 일부 직종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에서 國家資格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

행중에 있음.

- 따라서 우리의 경우 공식적인 養成過程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양성과정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 현재 民間資格으로 운영되고 있는 職種에 대해서는 資格試驗의 운영이나 자격관리 등을 엄격하게 하고 더불어 지속적인 보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직종이 요구하는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IV. 資格制度의 類型과 再活專門人力

- 자격의 종류는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公認民間資格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國家資格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취급하거나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을 대상으로 부여되며 1998년 현재 총 737종목임.
 - 再活分野의 국가자격은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육교사, 직업훈련교사 등이며, 나머지 직종은 모두 민간자격임.
 - 公認民間資格制度는 국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해당 자격의 검정,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기준을 만족한 자격에 대하여 國家資格과 똑같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이 制度는 국가가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을 관장하는 데에 따른 비용, 노력,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서 先進國에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음.

〈表 1〉 資格制度의 類型區分

구분	자격내용	법적 근거	시행 주체	시험기관	부여기관	비 고
국가 자격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	국가	국가기관 민간위탁	국가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 자격	- 국가자격 이외의 모든 자격	근거없음	민간	학회, 단체(협회), 개인, 법인	학회, 단체(협회), 개인, 법인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 등
국가 공인	- 자격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근거없음	민간	민간	민간(공인 표시)	국가자격과 동등

- 民間資格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격을 개설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로서 재활분야에서는 언어치료사, 수화통역사, 직업재활상담사, 보장구기사 등이 있음.
 - 따라서 현재 民間資格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은 자격의 질적 제고 및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公認民間資格이나 國家資格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表 2〉 國內 再活專門人力의 資格制度 概要

구 분	직 종
국가자격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육교사, 직업훈련교사
민간자격	보장구기사, 언어치료사, 청각임상가, 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상담사, 치료레크레이션 지도자, 수화통역사, 점역사
자격제도 없음	직업평가사, 보행훈련사, 재활체육지도자

- 國家資格의 변화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증대

하기 위한 公認民間資格制度의 도입을 추진중인 바, 공인민간자격제도는 자격의 운영주체는 민간기관이지만 그 민간기관이 부여하는 자격을 國家가 公認함으로써 국가자격과 동등한 공신력을 갖는 것임.

V. 再活專門人力 養成을 위한 政策方案

1. 基本方向

- 再活專門人力의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은 자격의 필요성 및 전문인력에 대한 需要·供給 推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함.
- 國家資格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양성과정과 자격검정요건 등의 기준을 갖춘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國家公認資格化하여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처우함.
 - 先進 外國의 경우에도 기술발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모든 직종을 국가자격화하지 않으며 國家公認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임.
- 再活醫學專門醫, 特殊教育教師 등 양성과정과 국가자격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직종 가운데에서도 수요와 공급실태를 감안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 長·短期 育成計劃을 수립하여야 함.

2. 障礙人 需要에 따른 適正 人力需給計劃의 樹立

- 再活專門人力 중 양성과정과 국가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 분야 가

운데서 장애인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人力供給計劃을 수립함.

- 再活醫學專門醫의 경우 장애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재 376명으로 부족한 실정이나 양성과정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전문의 전체적인 需給을 고려하여 양성계획을 수립함.
- 物理治療士는 총 31개교에서 배출되고 있고 선진국에 비해 공급과잉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再活院이나 복지시설 근무자는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이들이 시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마련함.
- 作業治療士는 재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실질적인 양성기관이 한 곳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이를 위해서는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확충함과 동시에 과잉공급 상태인 물리치료사 실태를 감안하여 기존 물리치료학과를 작업치료학과로 전환하도록 적극 유도함.
- 特殊教育 分野에 있어서는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비해 특수교육교사가 천 명 이상 부족한 실정이며(2001년 기준) 통합교육이 어려운 重症障礙兒의 교육재활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사의 양성과 배치의 확대가 필요함.

3. 再活專門人力的 段階的 國家資格 導入

- 義肢·補助器技士(補裝具技士)의 경우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준의료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의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國家資格을 도입함.

- 이를 위해 현재 1개 전문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장구 관련학과를 확대 설치하고, 일본의 예와 같이 기존의 종사자들을 위한 經過措置로서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함.
- 手話通譯士의 경우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수화통역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민간자격을 시행한 지 얼마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자격관리체계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우선적으로 公認資格化 함.
- 言語治療士와 聽覺臨床家, 職業再活相談士의 경우에도 장애인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분야로서 현재 學會나 大學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민간자격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 있으므로 실시과정을 검토하여 공인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再活體育指導者의 경우 스포츠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욕구와 지도자의 절대적인 부족, 스포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대 효과 및 전담기구(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의 사업 시행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는 양성과정과 현재 수료중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격제도를 내실있게 운용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公認資格化 함.
-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의 경우에는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재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현재보다는 장래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인자격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點譯士의 경우에는 '98년에 와서 資格制度가 처음 도입되었음을 감안할 때, 자격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우선 관련협회 등을 중심으로 점역사 양성과정을 확대 설치하고,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公認資格化 함.

4. 再活專門人力 養成過程의 優先 設置

- 職業評價士의 경우 현재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자격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의 職業再活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일차적으로 양성과정의 설치가 필요함.
- 步行訓練士의 경우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서 연 1회 1주일의 일정으로 보행훈련사 양성 講習會를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의 수준으로서는 재활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專門性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각장애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내실 있는 양성과정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순위임.

I. 序論

1. 研究의 意義 및 必要性

障 碍 人 再 活 專 門 人 力 은 장 애 인 이 완 전 하 게 자 립 할 수 있 도 록 생 의 주 기 에 따 라 의 료, 교 육, 직 업, 사 회 심 리 등 모 든 재 활 영 역 에 걸 쳐 장 애 인 의 재 활 을 전 문 적 으 로 원 조 하 는 인 력 으 로 규 정 할 수 있 다. 현 재 우 리 나 라 再 活 專 門 人 力 은 양 적 으 로 나 질 적 으 로 크 게 미 흡 한 실 정 이 며, 이 점 이 바 로 障 碍 人 再 活 事 業 의 발 전 을 저 해 하 는 주 된 요 인 이 라 고 할 수 있 다.

우 리 나 라 재 활 전 문 인 력 은 障 碍 類 型, 또 는 再 活 領 域 別 로 다 양 한 종 류 가 있 기 는 하 나 이 중 에 는 정 규 教 育 課 程 과 資 格 制 度 를 갖 춘 직 종 과 양 성 과 정 조 차 미 비 되 어 있 는 직 종 이 혼 재 되 어 있 어 직 종 간 편 차 가 심 하 고, 직 종 의 공 식 명 칭 이 나 분 류 체 계 등 에 대 한 합 의 도 이 루 어 지 지 않 아 서 비 스 需 要 者 인 障 碍 人 뿐 만 아 니 라 서 비 스 공 급 측 면 에 서 도 혼 란 이 있 는 실 정 이 며, 이 에 따 라 장 애 인 관 련 제 반 정 책 의 수 립 도 효 율 적 으 로 추 진 되 지 못 하 는 원 인 이 되 고 있 다.

특 히 양 성 과 정 과 자 격 제 도 가 미 비 되 어 있 는 再 活 專 門 人 力 의 경 우, 점 중 하 는 장 애 인 구 와 그 들 의 복 지 욕 구 에 대 응 하 기 위 한 공 급 기 반 이 전 혀 구 축 되 어 있 지 않 은 실 정 이 며, 未 資 格 者 에 의 한 서 비 스 제 공 에 따 른 낮 은 수 준 의 서 비 스 로 인 해 수 요 자 인 장 애 인 에 게 직 접 적 인 피 해 가 도 ला 가 는 등 의 부 작 용 도 우 려 되 고 있 어 근 본 적 인 개 선 책 이 요 구 되 고 있 다.

再 活 專 門 人 力 에 관 한 기 존 연 구 들 을 살 펴 보 면, 각 직 종 마 다 공 식 적

인 교육기관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지만, 再活專門人力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장애인의 수요에 따른 專門人力의 배치에 관한 적정 需給計劃이 마련되어야 인력의 과잉공급이나 부족 현상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재활전문인력의 양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과 함께 政策的으로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再活專門人力에 대한 논의는 1989년의 “障者福祉綜合對策”(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21~22)에서 1997년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障者福祉發展 5個年計劃”(보건복지부, 1997:41~42)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과 확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이후 각 협회나 기관을 중심으로 직종별로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에서 자격시험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障者福祉法의 개정안에 의지·보조기기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본 研究는 장애인 재활 분야에서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再活專門人力의 분류와 자격증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수급현황을 파악하고 각 직종별 양성방안 및 자격제도 확립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研究目的

본 研究는 재활전문인력의 수급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外國의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재활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재활전문인력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재활전문인력의 양성과정 및 수급예측
- 외국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재활전문인력 양성방안 및 자격제도 개선방안 제시

3. 研究方法

本 研究는 우리나라 재활전문인력의 현황과약을 위하여 직종별 양성기관과 배치, 자격증 교부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하며, 장애인의 수요와 전문인력 공급실태를 바탕으로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예측함으로써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재활전문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문헌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文獻研究에서는 재활전문인력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각 직종별로 개별적으로 연구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둘째, 再活專門人力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직종별로 관련단체나 협회(학회)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종사자 수 및 취업실태, 향후 수요 등을 파악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再活專門人力이 職種別로 協會나 學會가 구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이들 단체에서 자격관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外國의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제도에 관한 비교를 통해 政策的 示唆點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대상국가는 주로 美國과 日本이며, 이들 국가의 직종별 양성과정이나 자격제도 등의 실태를 비교하였다. 外國의 사례로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은, 美國의 경우 재활분야의 선진국으로서 재활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日本은 일부 직종에 있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國內에서 활동하는 재활분야의 전문가 중 상당수가

이들 국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자격을 취득한 점도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再活專門人力의 자격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현행 國家資格制度의 시행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 자격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政策協議를 통해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결과에 반영하였다.

Ⅱ. 國內 再活專門人力 現況

再活專門人力에 관한 기존의 연구와 장애인계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再活專門人力에는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청각임상가, 보장구기사(의지·보조기기사), 직업재활상담원, 수화통역사, 보행훈련사, 재활체육지도자 등이 있으며¹⁾, 障礙人의 활동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에 맞추어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음악치료사, 놀이치료사 등 재활전문인력의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직종은 매우 다양하지만 專門人力 양성 및 資格取得 과정에 있어서는 직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후 國家資格試驗에 합격해야만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이 있는가 하면, 관련단체나 협회에서 실시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직종도 있으며, 어떠한 養成過程조차 없이 徒弟式으로 배출되고 있는 職種도 있다. 또한 직업의 전문성 및 안정성에 있어서도 직종간 편차는 굉장히 큰 편이다.

이 章에서는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존 再活專門人力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양성 및 자격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향후 수요가 예상되는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편의상 각 전문인력을 再活分野, 즉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심리재활별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1) 재활전문인력의 명칭은 공식적으로 합의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1. 醫療再活

가. 再活醫學專門醫

1) 役割

再活醫學專門醫는 사고, 질병, 선천적인 요인 등에 의해 신체 기능의 일부를 상실한 障礙人에게 적절한 재활의학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상된 신체기능의 회복을 가능케 하는 醫療再活 분야의 핵심적인 인력이다. 일반적으로 재활의학전문직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장구기사, 재활간호사 등과 더불어 再活醫療팀을 구성하여 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활의료팀은 장애인의 궁극적인 재활을 위해서 운동기능의 회복은 물론 심리, 직업재활, 일상생활 기능의 회복에 이르기까지 상호 긴밀한 협력하에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 養成過程

再活醫學專門醫가 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1년의 인턴과정과 4년의 재활의학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1998년 10월말 현재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한 재활의학전공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은 57개이며, 총 307명이 수련과정중에 있다. 이는 1994년에 41개 수련병원에서 191명이 再活醫學專攻醫 과정에 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37%가 증가한 것으로서, 매년 재활의학 전문의 지망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1〉 再活醫學專攻醫 修鍊機關 및 修鍊現況

(단위: 명)

수련기관	전공의 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1	1	1	1
대전성모병원	1	1	1	1
부천성가병원	1	1	1	1
성빈센트병원	0	0	1	1
여의도성모병원	1	1	1	1
의정부성모병원	0	2	1	1
가천의대 중앙길병원	1	1	1	1
건국대병원	2	2	0	2
경북대병원	1	1	1	1
경상대병원	1	1	1	1
경희대병원	1	2	2	2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0	1	0	1
고려의대 구로병원	1	2	2	2
안암병원	2	2	2	2
고신의대 복음병원	2	1	1	1
광주기독병원	0	0	1	0
국립경찰병원	1	1	1	1
국립재활병원	0	2	3	3
단국대병원	1	1	2	1
대전선병원	1	1	1	1
동국의대 청부병원	1	1	1	1
동래봉생병원	1	0	1	1
동아대병원	0	0	1	1
동의의료원	0	0	1	1
부산대병원	1	1	2	2
서울대병원	2	2	1	3
서울적십자병원	1	1	1	1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2	2	2	3
마산삼성병원	0	0	1	1
순천향의대병원	1	0	2	1
천안병원	1	1	1	1
아주대병원	1	3	2	2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병원	6	5	6	6
영동세브란스병원	2	3	3	3
원주기독병원	2	2	1	3
영남대병원	0	1	1	1

〈表 II-1〉 계속

수련기관	전공의 수 (명)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울산의대 서울중앙병원	3	3	3	3
원광대병원	1	1	1	1
이화여대 동대문병원	1	1	2	1
목동병원	1	1	2	1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1	1	0	2
상계백병원	0	1	1	1
인하대병원	1	1	1	4
진남대병원	1	2	2	2
진북대병원	1	2	2	2
진주예수병원	1	1	1	1
조선대병원	1	1	0	1
중문의대 분당차병원	0	1	1	1
중앙대병원	0	1	0	1
충남대병원	3	3	3	3
충북대병원	0	1	2	2
한국보훈병원	2	2	2	3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1	1	1	1
춘천성심병원	1	1	0	1
한강성심병원	1	1	1	1
한양의대 구리병원	0	1	1	2
한양대병원	2	2	2	2
계	61	75	79	92

資料: 대한재활의학회, 내부자료, 1998.

3) 資格制度

再活醫學專門醫 자격은 醫療法에 근거한 國家資格으로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주관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專門醫 자격시험은 의사 면허증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재활의학 수련기관에서 4년의 수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外國의 의료기관에서 소정의 수련과정을 이

수한 자라야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연 1회 이상 실시되며,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에서 각각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1983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재활의학전문의가 처음 도입된 이후 1998년까지 배출된 재활의학전문의는 총 376명이며, <表 II-2>에서 보듯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表 II-2> 最近 5年間の 再活醫學專門醫 免許取得者 推移

(단위: 명, %)

연 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면허취득자 누계
1994	36	36	100.0	187
1995	46	45	97.8	232
1996	45	44	97.8	276
1997	52	52	100.0	328
1998	49	48	98.0	376

資料: 대한의사협회, 내부자료, 1998.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재활의학전문의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요 先進國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²⁾ 참고로 日本은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

2) 재활의학전문을 비롯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재활전문인력의 서비스 대상계층은 크게 장애인과 노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물론 전체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인 모두가 의료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의 경우 전체 장애인의 약 10% 정도(권혁철·이충휘, 1998), 노인의 경우에는 전체 노인의 약 20%(Jacoby, 1995) 정도가 의료재활서비스 대상 인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구의 10%와 전체 노인인구의 20%에 근거하여 각국의 의료재활전문인력 수를 비교하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노인에 대한 기준(65세 이상)은 나라마다 동일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국마다 장애에 대한 정의와 장애범주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동능력이 감퇴된 자 또는 일상생활 활동에 제한을 받는 자를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어 장애출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주로 의학 적 기준에 의해 장애를 판정하는 나라에서는 장애출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총인구수에 근거하여 의료재활전문인력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요국간 의료재활전문인력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에 비교가 불가능하며, 캐나다의 경우 1994년 자료임을 감안해야 한다.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는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122,630명(1998년), 美國은 48,934명(1998년), 그리고 캐나다는 135,135명(199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재활의학전문의의 수가 美國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캐나다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II-3> 再活醫學專門醫 數 國際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재활의학전문의 수	1인당 인구수
한 국	1998	376	122,630
미 국	1998	약 5,600	약 48,934
캐나다	1994	200	135,135

註: 일본은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제도가 없음.

資料: 1) 대한재활의학회, 1998.

2) 미국재활의학회(AAPM&R), 1998.

3)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4) UN, 『세계인구전망』, 1998.

4) 就業實態

1998년 11월 현재 大韓再活醫學會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再活醫學專門醫 자격취득자 376명의 근무현황은 <表 II-4>와 같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전체 운영비 중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는 再活院에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전문의가 전체의 4%에 해당하는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의 醫療再活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빈약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³⁾

〈表 II-4〉 再活醫學專門醫 就業 現況

(단위: 명, %)

취업기관	종사자 수	구성비
대학병원	132	35.0
종합병원	64	17.0
군의·공보의	40	11.0
재활원	15	4.0
개업	73	19.0
외국	15	4.0
기타	37	10.0
계	376	100.0

資料: 대한재활의학회, 내부자료, 1998.

5) 需給展望

1998년 현재, 전체 의사면허 취득자 65,337명 중 再活醫學專門醫가 차지하는 비율은 0.6%에 불과하며, 재활의학전문의 1인당 인구수는 122,630명으로서 需要에 비해 供給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재활의학전문의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의료재활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공급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再活醫學專門醫에 대한 적절한 공급은 2002년부터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취득자가 90명⁴⁾으로 고정되어 2030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

3)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907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1,800천원의 50%에 불과한 수준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4) 1998년 현재 재활의학전공의 1년차의 수는 92명으로서, 이들이 전공의 과정 4년을 마치고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은 2002년이다. 지난 7년간의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시험의 평균 합격률 98%를 적용하여 볼 때, 전체 92명 중 90명이 재활의학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였을 경우 2000년에 498명, 2010년에 1,271명, 2020년에 1,998명, 2030년에 2,679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재활의학전문의를 대한 수요는 일반병상의 10%가 재활병상으로 소요되고 재활병상 25명 상당 1명의 재활의학전문의가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권혁철, 1996) 2000년에 660명, 2010년에 843명, 2020년에 1,042명, 2030년에 1,247명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表 II-5〉 中長期 再活醫學專門醫 需給 推計

(단위: 명)

연 도	수요추계1)	공급추계2)
2000	660	498
2005	749	886
2010	843	1,271
2015	941	1,640
2020	1,042	1,998
2025	1,144	2,275
2030	1,247	2,679

註: 1)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2) 권혁철의 공급추계 공식을 이용하여 새로 추계하였음.

나. 物理治療士

1) 役割

醫療技士法에 의하면, 物理治療士는 온열치료, 전기치료, 광선치료, 수치료, 기계 및 기구치료, 마사지, 기능훈련, 교정운동 및 재활에 필요한 기기, 약품의 사용·관리 기타 物理療法的 治療 등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는 전문가로 정의되어 있다.

物理治療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사고나 질병, 또는 선천적 요인 등

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로서, 특히 장기간의 치료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인에게 있어서 물리치료는 재활의 필수과정이다. 즉, 物理治療士는 장애인을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질의 치료를 시행하여 이차적인 기형이나 잔류능력 손실이 뒤따르지 않게 하여 줌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 동작 및 사회생활의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권혁철, 1996).

대개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의료재활팀의 일원으로서 재활의학전문의,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보장구기사, 재활간호사 등 다른 주요 再活人力들과의 긴밀한 협력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2) 養成過程

物理治療學科가 대학에 개설된 것은 1963년 고려대학교 병설 의학 초급대학(현, 고려대학교 보건전문대학)이 처음이며, 1998년 현재까지 물리치료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3년제 전문대학이 22개교, 4년제 대학이 9개교로 총 31개교이며, 입학정원은 1,720명이다.

이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90년대 들어서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17개의 (전문)대학에 物理治療學科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며, 이 17개 학교의 물리치료학과 입학정원은 800명으로서 전국 물리치료학과 정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教授人力의 부족과 학생수의 과잉이라는 현실에서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1998년 현재 物理治療士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기관 현황은 <表 II-6>과 같다.

〈表 II-6〉 物理治療士 養成 教育機關 및 入學定員

(단위: 개교, 명)

종 류	지 역	학 교 수	입 학 정 원
4년제	서울	1	40
	경기	1	40
	강원	1	50
	충남	1	40
	대구	1	40
	전북	1	40
	전남	2	80
	계	8	330
3년제	서울	2	80
	경기	4	320
	강원	1	80
	대전	1	80
	충남	1	40
	충북	2	80
	대구	1	160
	경남	1	40
	경북	2	160
	부산	1	80
	광주	1	120
	전남	2	120
	전북	1	80
제주	1	40	
	계	21	1,480
총	계	29	1,810

資料: 권혁철·이충휘, 『21세기 우리나라 적정물리치료사 인력계획에 관한 연구』, 1998.

3) 資格制度

物理治療士의 자격제도는 ‘醫療技士 等に 관한 法律’에 근거한 國家資格이다. 시험은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의 주관으로 연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학 혹은 3년제 전문대학의 물리치료학과를 졸업한 자이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保健福祉部長官이 지정

한 보건·의료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수습한 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保健·醫療機關에서 관련업무를 3년 이상 수습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外國의 물리치료사 면허를 받은 자'로 되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최근 5년간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시험 평균합격률은 79.3%로 나타났으며, 1998년 현재까지 총 25회 시험을 통해 13,035명의 물리치료사가 배출되었다.

〈表 II-7〉 最近 5年間の 物理治療士 免許取得者 年次 推移
(단위: 명, %)

연 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면허취득자 누계
1994	1,014	866	85.4	9,110
1995	1,032	814	78.8	9,924
1996	1,046	687	65.6	10,611
1997	1,487	1,353	91.0	11,964
1998	1,414	1,071	75.7	13,035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8.

1998년까지의 物理治療士 면허취득자 13,035명이란 수치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물리치료사 1인당 인구수를 美國, 日本, 캐나다 등 주요 先進國과 비교해 본 결과 〈表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1인당 인구수는 3,537명으로서 사회경제적 수준(국민 1인당 GNP)을 고려하여 볼 때에 다른 先進國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물리치료 인력이 과잉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II-8〉 物理治療士 數 國際 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물리치료사 수	1인당 인구 수
한 국	1998	13,035	3,537
일 본	1996	17,316	7,269
미 국	1998	약 75,000	약 3,654
캐나다	1994	7,762	5,621

資料: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 1998.

2) 일본국제의학재단, *SEAMIC Health Statistics*, 1997

3) 미국물리치료사협회(APTA), 1998.

4)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5) UN, 『세계인구전망』, 1998.

6)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인구추계, 1997.

4) 就業實態

1998년 현재까지의 物理治療士 면허취득자 13,035명 중 거주자, 은퇴자 및 사망자를 제외한 취업가능 물리치료사의 수는 7,534명(권혁철·이충휘, 1998)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物理治療士 취업실태에 관한 최근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제 취업률 및 취업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종섭(1987)은 면허취득자의 46.9%, 장정훈과 신흥철(1989)은 48.6%,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1)은 1990년 기준 48.9%, 권혁철과 이충휘(1998)는 1995년 현재 57.8%만이 물리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반면 美國의 경우 물리치료사 면허취득자의 97%가 물리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物理治療士의 주요 취업 분야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의원 등), 재활원, 장애인복지관, 보건소, 스포츠시설(프로야구단, 축구단 등), 재활관련 연구소, 재활관련 의료기회

사, 재활관련 정부기관 등이며, 物理治療士가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수준은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치료사 면허를 취득한 직후 바로 취업한다면 대개 1,500여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II-9〉 物理治療士 就業 現況

(단위: 명, %)

취업 기관	종사자 수	구성비
종합병원	1,348	23.5
병원	1,061	19.5
정형외과 의원	803	14.0
신경외과 의원	195	3.4
일반외과 의원	602	10.5
교육기관 의원	1,078	18.8
기타 의원	149	2.6
재활원	184	3.2
기타	315	5.5
계	5,736	100.0

資料: 1) 박지환·정낙수·송영화, 『국내 물리치료사의 현황분석과 그 효율적 활용방안』, 1989.

2)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5) 需給展望

1998년 현재 총 29개교의 物理治療學科 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2002년부터는 졸업정원이 1,850명으로 고정된 채 2030년까지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물리치료사 면허취득자 수는 1998년도에 13,035명, 2000년도에 15,018명, 2010년도에 27,771명, 2020년도에 40,215명, 2030년도에 52,324명이 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반면 物理治療士에 대한 수요는 우리나라 병·의원 총 병상수 추계

결과에 근거하여 총 병상수의 10%가 再活病床으로 소요되고 재활병상 3병상당 1명의 물리치료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 1998년도에 7,770명, 2000년도에 8,717명, 2010년도에 12,642명, 2020년에 14,531명, 2030년도에 15,204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 수급상황은 공급과잉상태이며 2000년대에 들어서면 이러한 과잉이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권혁철·이충휘, 1998).

〈表 II-10〉 中長期 物理治療士 需給 推計

(단위: 명)

연 도	수요추계	공급추계
1998	7,770	13,035
2000	8,717	15,018
2005	10,908	21,406
2010	12,624	27,771
2015	13,800	34,037
2020	14,531	40,215
2025	14,961	46,317
2030	15,024	52,354

資料: 권혁철·이충휘, 『21세기 우리나라 적정 물리치료사 인력계획에 관한 연구』, 1998.

다. 作業治療士

1) 役割

作業1治療士는 정신이나 신체,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흥미롭고 목적 있는 작업이나 동작, 놀이를 통해 불완전한 신체기능을 회복시키고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장애를 가지고도 학교나 직장, 가정에서 최대한의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醫療再活 분야의 전문인력이다.

구체적으로 作業治療士는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發達障礙가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촉진시켜 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남아있는 능력을 이용하여 컴퓨터 사용법에서부터 옷 입기, 요리하기 및 식사법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가르치고 補助 裝具를 제작해 준다. 또한 정서·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일상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作業治療士의 제공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보면, 技能的 作業治療(일상생활동작훈련: ADL, 지각운동기능훈련, 의지 및 보장구 장착훈련), 支持的 作業治療, 직업개발을 위한 작업치료, 가정생활을 위한 재훈련 등이 있다.

2) 養成過程

1998년 현재, 作業治療士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과정이 개설된 곳은 연세대학교 재활학과(4년과정)와 광양전문대학 작업치료학과(3년과정)이다. 연세대학교 재활학과는 1979년에 개설되었으며, 매년 평균 3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1993년에는 大學院에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1998년 현재 석사학위 취득자 1명이 배출되었고, 4명이 재학중이며 박사과정은 1997년에 개설되어 현재 3명이 재학 중에 있다. 1998년 개설된 광양전문대학의 作業治療學科의 경우 전문교수요원의 미비,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해 내실있는 교육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향후 작업치료사 공식 양성과정으로 인정받을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作業治療士 양성과정으로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 외에 1975년부터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8

개의 國家指定病院에서 1년간 작업치료 수습교육을 실시하여, 수습한 자에게는 작업치료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1997년부터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表 II-11〉 作業治療士 養成過程 現況

양성 기관	양성 과정	설치년도	입학정원	졸업생 수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작업치료전공)	1979년	50명	30명 ¹⁾
광양전문대학	작업치료학과	1998년	80명	-

註: 1) 최근 5년의 평균 졸업생 수임.

3) 資格制度

作業治療士의 자격제도는 ‘醫療技士 等に 관한 法律’에 근거한 國家資格이다. 시험은 韓國保健醫療人國家試驗院의 주관으로 연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1996년까지는 4년제 대학에서 再活學科를 졸업한 자이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년 동안 국가지정병원에서 실습을 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받았으나, 1997년부터는 정규 교육기관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한 자에게만 作業治療士 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大韓作業治療士協會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8년까지의 작업치료사 자격증 소지자는 총 37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表 II-12〉 最近 5年間の 作業治療士 免許取得者 推移

(단위: 명, %)

연 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면허취득자 누계
1994	21	21	100.0	266
1995	25	23	92.0	289
1996	33	30	90.9	319
1997	29	28	96.6	347
1998	27	25	92.5	372

資料: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내부자료, 1998.

양적인 측면에서 국내 作業治療士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작업 치료사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주요 先進國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23,671명(1998년), 일본은 14,311명(1996년), 미국은 약 5,481명(1998년) 그리고 캐나다는 4,970명(1994년)으로 나타났다.

〈表 II-13〉 作業治療士 免許取得者 數 國際 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작업치료사 수	1인당 인구 수
한 국	1998	372	123,617
일 본	1996	8,741	14,311
미 국	1998	50,000	5,481
캐나다	1994	5,863	4,970

資料: 1)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998.

2) 일본국제의학재단, *SEAMIC Health Statistics*, 1997.

3) 미국작업치료사협회(AOTA), 1998.

4)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5) UN, 『세계인구전망』, 1998.

6)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인구추계』, 1997.

物理治療士의 경우 1인당 인구수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반해, 작업치료사는 미국의 1/22, 일본의 1/9 수준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물리치료사 대비 작업치료사의 비율을 主要國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35:1, 일본은 1.9:1, 미국은 1.5:1 그리고 캐나다는 1.3:1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두 직종간 매우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作業治療士의 수가 이렇듯 적은 원인은 작업치료에 대한 인식부족과 더불어 작업치료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 곳밖에 없기 때문이다.

4) 就業實態

1998년 현재 전국의 作業治療室은 98개소로서 이를 설치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대학병원에 37개소, 병원에 35개소, 의원에 4개소, 복지관에 13개소, 재활원 등 시설에 7개소, 기타 기관(보호감호소·연구소)에 2개소가 개설되어 있다.

〈表 II-14〉 作業治療室 開設 現況

설치기관	대학병원	병원	의원	시설	복지관	기타	계
작업치료실 수 (개소)	37	35	4	7	13	2	98

資料: 이미지, 『한국작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1998.

大韓作業治療士協會 집계에 따르면, 이들 98개소 作業治療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의 수는 1998년 현재 192명으로서, 전체 면허취득자 372명 중 순수 취업률은 51.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타 직종 종사자는 38명, 미취업자는 14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취업자의 경우 78.6%가 대학병원이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으며, 재활기관 및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作業治療士는 전체의 1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사의 임금 수준은 근무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한 직후 바로 취업한다면 대개 1,500여 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II-15〉 作業治療士 就業 現況

(단위: 명, %)

취업기관	종사자 수	구성비
대학병원	76	39.6
병원	68	35.4
의원	7	3.7
재활기관·복지관	38	19.8
기타	5	2.5
계	192	100.0

資料: 이미자, 『한국작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1998.

5) 需給展望

作業治療士 수의 국제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사는 需要에 비해 供給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作業治療士 양성기관에서 배출되어지는 인력만으로는 수요가 부족하므로, 향후 교육기관의 증설을 통한 供給方案을 마련해야 한다. 권혁철(1996)에 따르면, 2002년까지 5개 대학에 作業治療學科를 신설한 후, 2005년부터 2030년까지 각년도 졸업정원을 215명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의 공급인원은 2005년에 785명, 2010년에 1,740명, 2020년에 3,423명, 2030년에는 4,875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 반면 作業治療士에 대한 수요는 일반병상의 10%가 재활병상으로 소요되고 재활병상 25병상당 1명의 作業治療士가 필요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05년에 1,309명, 2010년에 1,515명, 2020년에 1,744명, 2030년에 1,825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表 II-16〉 中長期 作業治療士 需給 推計

(단위: 명)

연 도	수요추계	공급추계
2000	1,046	310
2005	1,309	785
2010	1,515	1,740
2015	1,656	2,616
2020	1,744	3,423
2025	1,795	4,174
2030	1,825	4,875

資料: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1996.

라. 補裝具技士(義肢·補助器技士)

1) 役割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補裝具(再活補助器具)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補裝具의 범위나 품목도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補裝具技士에 관한 규정이나 및 보장구기사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관한 규정도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⁵⁾

일반적으로 補裝具라 함은 장애인의 기능적 능력을 유지·증가·개선

5) 국회 계류 중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재활보조기구의 정의를 명시하고 품목고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키는데 사용되는 물건, 장비의 부분, 제품, 혹은 설비를 의미하며(박윤서, 1997), 또한 보장구기사는 절단 또는 마비 등의 사지 체간 기능 장애에 대해서 의지 또는 장구를 재활의학전문의를 진단에 따라 제작하며 義肢, 補助器의 적합성을 높임으로써 신체기능을 보완·향상시키기 위한 補裝具 개발·제작 전문가(권도용 외, 1998)라고 할 수 있다.

障 碍 人 에 게 있 어 서 의 지, 보 조 기, 휠 체 어, 보 청 기, 흰 지 광 이 등 과 같 은 補 裝 具 는 재 활 을 위 한 가 장 기 본 적 인 도 구 이 자 장 애 인 의 신 체 적 안 전 과 직 결 되 는 중 요 한 요 소 로 서 이 를 개 발 하 고 제 작 하 는 補 裝 具 技 士 의 역 할 은 매 우 중 요 하 다.

2) 養成過程

1996년 이전까지 補裝具技士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은 없었으며, 주로 일부 전문가들의 해외연수나 전문가 초빙 등을 통해 익힌 기술을 자체적으로 전수하는 徒弟式에 의해 보장구기사의 양성이 이루어져 왔다. 이는 補裝具業體 운영이 주로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권선진 외, 1997).

'70년대 이후 세계재활재단의 후원으로 '98년 현재까지 약 40여 명이 4~5개월의 해외 연수교육을 받았으며, '80년대에 들어서서는 한국보장구협회 주최의 기사교육과 大韓再活醫學會 주최의 의지·보조기 연수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연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전문대학 수준에서 보장구기사의 양성이 시작된 것은 1996년 대구 미래대학(구, 경북실업전문대학)에 再活工學科가 설치됨으로써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97년 3월 현재 2학년 81명, 1학년 86명, 산업체 27명 등 194명의 재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다.

3) 資格制度

현 障礙人福祉法에는 보장구 교부(제23조), 보장구 업체의 육성(제24조)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제50조) 등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보장구기사에 대한 규정은 미비되어 있다.

다만 韓國補裝具協會의 자체규정에 의거하여, 20년 이상의 경력자는 1급, 15년 이상의 경력자는 2급, 7년 이상의 경력자는 3급으로 구분하는 자격인정제도가 198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규양성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경력만으로 자격을 심사하는 현재의 자격인정제도는 대외적인 공신력을 갖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補裝具技士가 보장구 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지, 또한 보장구가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맞춰 기술적인 하자없이 제대로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확인과 검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보장구기사 간 기술 격차가 크고, 無資格者에 의해 장애인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 障礙領域에 걸쳐 장애인의 의료재활 및 일상생활의 안전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補裝具技士의 경우 체계적인 양성과정의 설치와 공인된 자격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직종이라 할 수 있다. 外國에서는 보장구 제작을 準醫療(paramedical)의 한 분야로 간주하여 보장구기사로 하여금 인체해부학, 생체역학, 보장구제조학 등의 이론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과목을 이수한 후에는 일정기간의 실습훈련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4) 就業實態

1997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85개의 공식적으로⁶⁾ 확인된 補裝具

6) 보장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주로 의지와 보조기를 취급하는 업체를 말하며, 그

業體가 있으며, 여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하여 약 1,486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업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업체당 8.2명의 종사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補裝具業體는 대부분 영세한 규모로서 종사자수가 5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의 56.1%에 이르며, 종사자 중 보장구를 직접 생산하는 補裝具技士는 업체당 평균 2.7명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보장구업체의 54.1%에서 徒弟式 訓練에 의해 자체적으로 보장구 기사를 양성해서 충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학력수준은 고졸이하가 76.9%로서 전문성 면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구기사의 급여수준은 월평균 대졸 초임의 경우 80만원, 고졸 초임은 72만원, 타업종에 종사한 근무경력을 포함한 10년 근무경력자의 경우 대졸이 158만원, 고졸이 143만원으로 파악되었다(권선진 외, 1997).

5) 需要展望

일반적으로 補裝具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약 50%를 補裝具 需要者로 간주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의 41.6%가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으며(정기원 외, 1995), 향후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합하면 <表 II-17>과 같이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補裝具技士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義肢·補助器技士에 대한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파악된 지체장애인은 重複障礙를 포함하여 모두 728,740명으로서, 이 중 절단자 전체가 의지를 필요로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지체장애인 중 50%가 각종 補助器를 필요로 한 것으로 보면, 의지나 보조기를 필

외 미등록업체·무허가업체·미파악업체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보장구업체수는 185곳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요로 하는 장애인은 모두 약 444천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보조기·의지의 내용연수를 3년으로 산정할 경우 연간 소요량은 148,084개이며 기사가 1인당 연간 120개를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지·보조기기사 수는 <表 II-18>과 같이 약 1,230명으로 추정된다.

<表 II-17> 障 碍 人 補 裝 具 需 要 推 定(1995年)

(단위: 명, %)

구 분	장애인수(a)	보장구 사용 장애인수(b)	b/a (%)	보장구 필요 장애인수(c)	보장구 수요(b+c)
지체장애	696,200	296,600	42.6	74,500	371,100
시각장애	73,100	48,000	65.7	8,200	56,200
청각장애	153,400	78,500	51.2	28,200	106,700
언어장애	36,400	4,000	11.1	1,600	5,600
정신지체	69,700	1,100	1.6	2,200	3,300
계	1,028,800	428,200	41.6	114,700	542,900

註: 정신지체는 지체장애 등과 같이 중복장애로 사용하는 보장구 포함.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추정된 1,230명을 1997년 현재 국내 補裝具 業體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기·의지기사 수 약 460명~600명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최소 630명에서 최대 770명의 보조기·의지기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産業災害나 交通事故, 각종 질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補裝具의 범위가 과거의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등에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일상생활용품이나 건축용품, 기타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해지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補裝具技士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18〉 補助器·義肢技士 需要 推定

지 체 장애인수	보조기·의 지수요자	내 용 연 수	연 간 소요량	기사1인당 연간제작량	기 사 소요인력	현 재 인 력	부 족 인 원
728,740명	444,254명	3년	148,084개	120건	1,230명	460~600명	630~770명

資料: 권선진 외, 『장애인 보장구 산업의 육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마. 言語治療士

1) 役割

言語治療士⁷⁾는 말이나 言語障 碍로 인하여 의사소통에 문제를 가진 자의 잠재되어 있는 언어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며,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케 하여 일상생활에서 원만한 의사소통과 정상적인 言語發達을 유도하는 전문인력이다.

말·언어장애는 증상에 따라 언어발달지체 및 장애, 調音障 碍(발음장애), 말더듬, 發聲障 碍(목소리 이상), 실어증, 특수장애에 의한 말·언어장애(구개파열, 뇌성마비, 자폐, 청각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장애는 선천적인 요인이나, 발달과정이나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된다.

治療內容으로는 발성기관훈련, 조음기관훈련, 호흡훈련, 발성훈련, 조음훈련, 낱말훈련, 문장훈련, 회화훈련 등이 있으며, 치료대상의 3/4이 17세 이하의 兒童 및 靑少年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승환, 1990).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의 평가·진단 및 치료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 언어장애 임상연구, 가족상담, 언어임상 수련과정의 지도, 감독

7) 언어치료사에 대한 명칭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로서, 한국언어병리학회는 ‘언어 임상가’로, 한국언어치료학회는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는 ‘언어치료임상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및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2) 養成過程

1998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言語治療士를 양성하는 기관은 대학(원) 4곳과 언어치료사 관련 학회 2곳이다. 대구대학교의 경우 1988년 재활과학대학 내에 40명 정원의 聽能言語再活學科(1989년에 언어치료학 과로 변경함)가 신설된 후 1992년에 재활과학대학 언어치료전공 석사 과정이, 1997년에는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에 언어치료전공 석사 과정이, 1998년에는 교육대학원에 언어치료전공 석사 과정이 설치되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연세의료원 내 이비인후과에 言語治療室을 개설한 연세대학교는 1994년 3월부터 醫學技術修鍊院에 언어치료사 양성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대학원과정으로 개편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1995년에 대학원 言語病理學 협동과정(석·박사 과정)을 설치하였으며, 단국대학교는 1998년에 특수 교육대학원에 言語治療 전공과정(석사과정)을 개설하였다.

1986년 10월 창립된 ‘韓國言語病理學會’는 1987년부터 말·언어치료 전문인과 특수교사들의 보수교육을 목적으로 전문요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言語臨床家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1990년 5월 창립된 韓國言語治療學會도 1997년 10월 현재 총 16회의 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40시간 이상 연수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 언어치료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에는 대불대학교 학부과정에 言語治療學科가 신설될 예정이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 언어치료전공과정이 설치될 계획이다.

〈表 II-19〉 言語治療士 養成機關 現況

양성 기관	양성 과정	설치년도	이수자 수	비 고
대구대학교	언어치료학과 및 대학원과정	1988	285명	'9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1995	4명	'99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1994	62명	'97년까지는 의학 기술수련원 언어치료사 양성과정이었음.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언어치료전공	1998	-	
한국언어병리학회	보수교육과정	1987	39명	
한국언어치료학회	연수교육과정	1992	151명	

註: 학회의 이수자 수는 자격취득자 수임.

3) 資格制度

현재 우리나라에는 言語治療士에 관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언어치료사 관련 두 학회에서 學會長 명의로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韓國言語治療學會가 1992년부터 자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言語治療士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韓國言語病理學會도 1997년부터 言語臨床家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表 II-20 참조).

이렇듯 2개의 자격증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두 학회는 1998년 9월 ‘언어치료임상가’라는 공동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미국의 ASHA(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를 모델로 하여, 한국언어병리학회와 한국청각임상가회가 통합되어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가 창립되었고 1~2년 내에 한국언어치료학회도 통합하기로 잠정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 제정한 언어치료임상가의 자격에 관한

제반 사항은 <表 II-21>과 같으며, 1999년 2월 제1회 언어치료임상가 자격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表 II-20> 學會 主管 資格證 所持者 數

(단위: 명)

구 분	한국언어치료학회	한국언어병리학회
1992	24 (2)	-
1993	28 (1)	-
1994	36 (5)	-
1995	95(48)	-
1996	77(27)	-
1997	107(58)	39
계	367(151)	39

註: ()은 2급 준언어치료사(연수과정만 이수) 자격증 소지자 수임.

資料: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요원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7.

〈表 II-21〉 言語治療臨床家 資格 規定

자격구분	자격 규정
언어치료 임상가(1급)	1.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언어병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학회가 시행하는 언어치료임상가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관기관에서 학회장이 인정하는 언어치료임상가의 지도와 감독하에 12개월(전일제) 이상의 언어임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 5.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 언어치료임상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 언어장애 임상경력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언어치료 임상가(2급)	1. 정회원인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언어병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학회가 시행하는 언어치료임상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수련과정을 마친 자
자격시험	연 1회 필기시험만 치루어지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수련과정	해당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정의 지도·감독·평가를 맡은 언어치료임상가가 제출한 수련과정 피이수자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수련과정 이수가 인정됨.
특례규정	현재 언어치료임상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격기준에 이르지 못한 회원은 별도의 자격과 절차를 거쳐 언어치료임상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기 타	한국언어병리학회 및 한국언어치료학회의 학회장이 수여한 기존의 언어임상가 자격증 또는 언어치료사 자격증은 언어치료임상가 자격증으로 간주함.

資料: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998.

4) 就業實態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言語治療士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과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규모 및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韓國言語病理學會 및 韓國言語治療學會에서 발급하는 언어치료사(언어임상가)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1997년 10월 현재 406명, 공식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가 1998

년 12월 현재 541명, 학회 회원수가 1998년 12월 현재 약 1,05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기준에 따라 수치가 다를 뿐 아니라, 중복 집계되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에 言語治療士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언어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言語治療士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이 特殊教育學科 전공자로서 주로 학교 등 교육재활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7년 10월 현재 국내 言語治療室 현황을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이 29개소, 대학·종합병원이 21개소, 복지관이 10개소, 기관 및 학교가 6개소, 재활원이 5개소로서 총 71개소에서 언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전국의 私設 言語治療機關의 수만도 100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정옥란, 1997).

〈表 II-22〉 言語治療室의 機關別 分布

기 관	대 학· 종합병원	복지관	재활원	기관 및 학 교	개 인	계
개소수	21	10	5	6	29	71

資料: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요원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7.

5) 需要展望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言語障礙人 수는 중복장애를 포함하여 14만 7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행 障礙人 福祉法 상 언어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장애상태가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언어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特殊教育學界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내 언어장애인 규모를 전체 인구의 약 5%인 약 21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대한특수교육학회, 1995).

〈表 II-23〉 言語障礙人の 現況

구 분	조음장애	말더듬	음성장애	말장애	계
비율 (%)	42.7	7.7	4.7	44.8	100.0(146,76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언어치료사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1998년 현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言語治療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言語治療士의 수를 675명⁸⁾이라고 가정하여 언어치료사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美國 및 日本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언어치료사 1인당 인구는 68,309명으로서 1인당 GDP 등 사회경제적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美國의 3,438명에 비해 언어치료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日本의 50,348명에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언어치료사가 석사 이상의 학위와 엄격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言語治療士의 질적 수준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은 말할 것도 없다.

〈表 II-24〉 言語治療士 數 國際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언어치료사 수	1인당 인구 수
한 국	1998	675	68,309
미 국	1998	79,698	3,438
일 본	1996	2,500	50,348

資料: 1) Ameri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1998.

2) 일본노동연구기구, 『일본직업핸드북』, 1997.

3) UN, 『세계인구전망』, 1998.

4)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인구추계』, 1997

8) 1998년 12월 현재 언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수 406명, 언어치료사 양성과정 이수자 수 571명, 그리고 학회 회원수 1050명의 평균을 구하면 675명으로서 이는 한국 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언어치료사 수에 근접하는 것임.

韓國言語聽覺臨床學會에 따르면, 현재의 수준에서 필요한 언어치료사의 수는 대략 2,000~3,000명이며, 향후 장애인과 노인 등 언어치료 대상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2010년도에는 약 20,000명 정도의 언어치료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 聽覺臨床家

1) 役割

聽覺臨床家(Audiologist)는 聽覺障礙를 예방 및 진단하며 청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전문인력이다. 청각장애는 출생시 후유증이나 바이러스 감염, 유전자 이상 등 선천적 요인 또는 큰 소리에 노출된 경우 등의 요인에 의해서 비롯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後天的 原因에 의해서 청각장애를 지니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⁹⁾

聽覺障礙의 치료는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치료의 과정에는 의학적 처치나 보청기 장착, 그리고 聽覺再活訓練(청력훈련, 구화훈련 등)이 포함된다. 聽覺臨床家は 이러한 모든 과정에 다른 재활전문인력들과 더불어 팀을 이루어 참여하거나 또는 직접 클리닉을 운영하여 독립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수행하기도 한다.

聽覺臨床家の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聽力測定器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청력의 손실 정도를 측정하고,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補聽器의 활용을 도와주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말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9)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중 청각장애인의 장애발생 원인을 보면, 선천적·출생시 원인이 전체의 4.9%, 후천적 원인이 86.2%,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8.9%로 나타났다.

2) 養成過程

1996년까지 우리나라에는 聽覺臨床家를 양성하는 정규 교육기관이나 양성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대부분 근무처 전임자로부터 徒弟式 修鍊에 의해 양성되었다(한옥희, 1990).

1997년 국내 최초의 청각전문가 과정이 한림대학교 대학원에 설치되었는데, 이 과정은 연구과정으로서 기간은 1년이며 1기생 30명이 이미 수료하였고 2기생 20명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다. 이어서 1998년에는 동 대학 사회복지대학원 재활학과에 聽覺學 전공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20명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방학기간 중에는 청각장애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難聽專門家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현재까지 25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

〈表 II-25〉 聽覺臨床家 養成過程 現況

양성 기관	양성 과정	설치년도	이수자 수	비 고
한림대학교	대학원 청각전문가과정	1997년	50명	연구과정 (1년)
	사회복지대학원 재활학과 청각학전공	1998년	20명	석사과정 (2년)
	난청전문가과정	1998년	25명	관련종사자 대상

註: 이수자 수는 '98년 교육생 수를 합한 것임.

3) 資格制度

현재 우리나라에는 聽覺臨床家에 관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가 주관하는 민간자격이 있다. 韓國言語聽覺臨床學會는 미국의 ASHA(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를 모델

로 하여, 기존의 韓國言語病理學會와 韓國言語聽覺士會가 통합한 것으로서 1998년 9월 창립되었다.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에서 제정한 청각임상가의 자격규정은 <表 II-26>과 같으며, 1999년 2월 제1회 청각임상가 자격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表 II-26> 聽覺臨床家 資格 規定

자격구분	자격 규정
청각임상가 (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회의 정회원인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원에서 청각학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학회가 시행하는 청각임상가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 유관기관에서 학회장이 인정하는 청각임상가의 지도와 감독하에 12개월(전일제) 이상의 청각임상 수련과정을 마친 자 5. 학회가 인정하는 외국 청각임상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국내 청각장애 임상경력 1년 이상인 회원으로서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청각임상가 (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회원인 자 2. 학회가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청각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3. 학회가 시행하는 청각임상가 2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수련과정을 마친 자
자격시험	연 1회 필기시험만 치루어지며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함.
수련과정	해당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에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정의 지도·감독·평가를 맡은 청각임상가가 제출한 수련과정 피이수자에 대한 평가보고서가 자격증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수련과정 이수가 인정됨.
특례규정	현재 청각임상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자격기준에 이르지 못한 회원은 별도의 자격과 절차를 거쳐 청각임상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資料: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998

4) 就業實態

聽覺臨床家の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청각재활요원은 청력검사

자와 聽能訓練士 그리고 보청기전문가¹⁰⁾로 구분할 수 있다. 聽力検査者는 청력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청각장애인의 청력손실 정도를 측정하며, 聽能訓練士는 청력훈련과 口話指導 등을 통해 청력재활을 돕고, 보청기관 관련 종사자는 보청기의 선택, 판매, 사용지도 및 관리를 담당한다. 이 세 직종의 경우도 공식적인 양성과정이나 자격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종사자 규모 및 근무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韓國言語聽覺臨床學會 자료에 의하면, 1998년 현재 聽力検査者는 약 220~230명으로서 이 가운데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70~80명,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50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聽能訓練士는 20여명으로서 주로 일반병원이나 특수학교, 조기교실, 기타 청각장애인복지 관련단체 등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補聽器專門家는 약 3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습득 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취업후에 전임자에게 배우거나 실습중에 권위자로부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도 특수교사, 일반교사, 간호사, 언어치료사 자격증 등으로 다양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한옥희, 1990).

5) 需要展望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내 청각장애인 수는 199천 명으로서 전 인구의 0.4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현행 障礙人福祉法 상 청각장애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장애상태가 법적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聽覺臨床家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0) 보청기전문가는 보청기를 제작하는 보청기기사나 단순히 보청기를 판매하는 보청기판매상이 아닌, 보청기관 관련 종사자 중 청각임상가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자를 의미한다.

반면에 서비스 공급자인 聽覺臨床家は 공식 양성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없으며, 기존 재활인력 550명의 경우 전문가로서의 청각임상가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엄격한 의미에서 국내 聽覺臨床家は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表 II-27〉 聽覺障碍人の 現況

구 분	경도	중등도	중도	평형기능장애	계
비율 (%)	43.3	20.5	36.2	0.3	100.0(196,168)

註: 무응답 제외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1995.

美國의 경우 청각임상가는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 후 엄격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을 거쳐서 배출되는데, 1998년 12월 현재 청각임상가 자격취득자는 13,504명으로서, 聽覺臨床家 1인당 인구수가 20,292명 수준이다. 美國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인구 20,000~30,000명당 1명의 청각임상가가 필요한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대략 1,000명의 청각임상가가 필요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1998).

2. 教育再活

가. 特殊教育教師

1) 役割

特殊教育教師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아동들에게 그들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핵심적인 재활전문인력이다. 그 동

안 特殊教育은 개인의 교육권,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장해 주려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개인의 독특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교육환경에서 특별히 훈련된 教師로 하여금 교육을 담당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障礙를 특수하게 여기던 관점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교육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분 하에 一般教育和 분리 실시되어 온 특수교육은 그 효과가 회의적이라는 비판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수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은 시대적 요청이었으며, 결국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통합지향의 특수교육, 즉 統合教育이다. 통합교육은 障礙人的 社會統合이라는 장애인복지의 대원칙에 근거한 것으로서 장애를 보편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일반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가능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교육현장에서 함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障礙人和 非障礙人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상호 이해하고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교육이다. 統合教育은 세계 특수교육의 큰 흐름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흐름에 맞추어 特殊教育振興法을 개정(1994)하는 등 중증 장애아동을 포함한 통합지향의 특수교육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2) 養成過程

1998년 10월 현재, 特殊教育學科가 설치된 전국의 4년제 대학은 총 10개교로서 이 중 國立大는 2개교이고, 私立大가 8개교이다. 1992년 12월 教育法 개정으로 인해 교육대학원(특수교육전공) 또한 특수교육 담당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말 현재 공주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우석대학교에서 계절제 및 야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교육기관을 통해서 매년 약 350명 정도의 特殊教育教師가 양성되고 있다.

〈表 II-28〉 特殊教育 教師 養成大學 및 入學定員

(단위: 명)

대 학 명 ¹⁾	학 과 명	입학 정원	비 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40	교직과정
	초등특수교육과	35	
	유아특수교육과	25	
	치료특수교육과	30	
	직업재활과	12(40)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40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60	
강남대학교	특수교육과	40	
우석대학교	특수교육과	40	
	유아특수교육과	20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60	
용인대학교	특수체육과	12(40)	교직과정
부산대학교	특수교육과	20	
창원대학교	특수교육과	20	'98년 신설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30	'98년 신설
계		484	

註: 1) 학교 순서는 설치년도 순서에 따른 것임.

3) 資格制度

特殊教育教師 자격제도는 일반학교 教師(초등학교, 중등학교, 유치원)의 자격제도와 동일하다. 즉 별도의 자격시험 없이 자격취득 요건만 갖추면 되는 正教師와 소정의 시험 등을 합격해야 하는 準教師로 구분되어 있다. 준교사 자격시험은 교사자격의 종별에 따라 敎員需給計劃 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되는데, 최근에는 교사양성체제가 안정되고 정규 교사양성기관 졸업자가 대량 배출되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교사 자격을 수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表 II-29〉 特殊教育教師 資格 規定

자 격	자격 규정
정교사(1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정교사(2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자 2.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 3.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4.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5.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교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資料: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자격요람(1), 1998.

4) 就業實態

特殊教育에 종사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사는 크게 特殊學校에 근무하는 교사와 一般學校 特殊學級에 근무하는 교사로 나뉜다. 우선 특수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特殊教育教師는 1998년 4월 현재 4,15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을 자격별로 구분해 보면, 교장이 120명, 교감

이 122명, 1급 정교사가 1,784명, 2급 정교사가 1,836명, 준교사가 7명, 실기교사가 125명, 그리고 기타가 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전체 특수학교 중 私立學校가 66.1%에 이르고 있으며,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있어서도 사립학교가 6.0명으로서 국립의 4.8명과 공립의 5.1명보다 많다는 것이다. 이는 障兒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큰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이 오히려 國立 및 公立學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表 II-30 참조).

〈表 II-30〉 特殊學校 現況

(단위: 개, 명)

설립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교사1인당 학생수
국립	4	121	1,180	244	4.8
공립	36	862	7,946	1,566	5.1
사립	78	1,410	14,130	2,343	6.0
계	118	2,393	23,256	4,153	5.6

註: 1998. 4. 1 기준의 통계임.

資料: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반면에 一般學校 特殊學級에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3,743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수교육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총 2,037명으로 54.4%이고 나머지는 일반교사 자격으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特殊學級 중 79.9%가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며, 18.9%가 중학교에, 그리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는 각각 0.6%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때, 障兒童이 상급학교에 진학할수록 특수교육을 통한 교육재활의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表 II-31〉 特殊學級 現況

(단위: 개, 명)

학교별	설치교	학급수	학생수	교원수	교사1인당 학생수
유치원	22	23	134	21	6.4
초등학교	2,289	2,980	20,330	2,984	6.8
중학교	624	704	4,390	716	6.1
고등학교	17	21	177	22	8.0
계	2,952	3,728	25,031	3,743	6.7

註: 1998. 4. 1 기준의 통계임.

資料: 교육부, 『특수학교(급)실태조사서』, 1998.

5) 需給展望

教育部의 1998년 ‘特殊教育年次報告書’에 따르면, 1998년 4월 1일 현재 5~17세까지의 학령기 대상학생 9,179천여 명 중 장애아동은 전체의 2.44%인 224천여 명이며, 이 가운데 49천여 명만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特殊教育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5천여 명의 장애아동들 중 일부가 병원이나 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一般學級에 편성되어 특수교육의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表 II-32 참조).

〈表 II-32〉 特殊教育對象者 特殊教育受惠 現況

(단위: 명, %)

학령인구	장애아동수	특수교육 수혜자	특수교육 비수혜자
9,178,811	223,700 (100.0)	48,287 (21.6)	175,413 (78.4)

資料: 1)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1998.

2) _____, 『특수학교(급)실태조사서』, 1998.

한편, 特殊學校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日本의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日本이 교사 1인당 학생수가 1.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교사 1인당 5.6명으로서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이 일본에 비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다(表 II-33 참조). 特殊教育對象者 가운데 78.4%가 특수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특수학교교사 수도 일본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볼 때, 특수교육 교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33〉 韓國과 日本의 特殊學校教師 數 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특수학교 교사수	특수학교 학생수	특수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한 국	1998	4,153	23,256	5.6
일 본	1997	55,125	86,444	1.6

註: 일본에서는 특수학교라는 명칭 대신 장애유형별로 농아학교, 맹아학교, 양호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資料: 1)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8.

2) 일본문부성, 1998.

3. 職業再活

가. 職業生活相談員

1) 役割

障 碍 人 에 게 있 어 서 직 업 재 활 은 재 활 의 최 종 단 계 라 할 수 있 다. 일 반 적 으 로 장 애 인 은 신 체 적 · 정 신 적 결 함 을 가 지 고 있 기 때 문 에 노 동 시 장 에 진 입 하 여 직 업 을 갖 기 가 어 렵 다. 職 業 再 活 專 門 人 力 은 이 렇 듯 혼

자의 힘으로는 취업 및 직업유지가 힘든 장애인에게 직업평가, 직업 훈련,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障礙人의 완전한 自立을 지원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직업재활수준은 專門人力 확보와 서비스 제공 등 전반적인 면에서 주요 先進國과 비교해 열악한 수준임은 물론 이거니와 의료, 교육, 사회·심리재활 등 국내 다른 재활영역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가장 낙후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職業評價士와 職業再活相談士 그리고 職業訓練教師 등 직업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식 과정이나 자격제도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직업재활전문인력 중 법적 근거를 갖추고 공식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는 전문인력은 職業生活相談員이 유일하다. 직업생활상담원은 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는 업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직장내 생활상담 지도업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는 하나 명칭과 기능면의 모호성으로 인해 직업재활전문인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職業再活相談員은 ‘障礙人雇傭促進 等에 관한 法律(1990)’ 제53조(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¹¹⁾와 동법 시행령 61조(상담원의 선임), 동법 시행규칙 21조(상담원의 자격)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勞動部 고시 (96-11호)인 ‘障礙人職業生活相談員 養成教育基準’에 구체적인 교육방법과 교육기간, 시험방법, 자격증서 등이 명시되어 있다.

2) 養成過程

1991년부터 현재까지 勞動部 산하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에서 직

11) 이 법에서는 상시 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를 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생활상담원 양성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교육기간은 2주(연 1회 실시)이며, 교육인원은 약 40명이다. 교육대상 자격은 직업생활상담원 선임 의무 대상업체(10인 이상의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직원 중 사업주가 추천한 자 또는 심리학, 특수교육학, 사회복지(사업)학, 재활학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관련단체에서 장애인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되어 있다. 교육은 理論(48시간 총 14과목)과 實習(22시간)을 합쳐 총 70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表 II-34〉 職業生活相談員 養成過程

과정	교과과목(시간)	비고
이론	장애인복지론(6), 재활의학(4), 직업능력평가(4), 직업지도(4), 고용관리지원 실무(3), 상담심리(3), 수화 및 점자(6), 직업재활상담(4), 정신위생(2), 장애인고용촉진법규(2), 교양체육 및 여가(2), 장애인의 사회재활(3), 간담회(2), 기타(3)	총 15과목 48시간
실습	직업재활실습(14), 현장견학(8)	총 2과목 22시간

資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1998.

이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교육이수자의 신장 변동이나 상담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사업체 선임자에 대하여는 매 3년마다 補修教育에 참석토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2개 지방사무소의 장애인 취업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內部教育이 실시되고 있다. 내부교육은 년 2회 1주의 일정으로 직업재활상담, 직업평가개론, 법규/의료지식, 노동시장 동향, 고용정보 등의 교과목을 편성하여, 1회 평균 약 70여 명의 직원들로 하여금 이수케 하고 있다.

3) 資格制度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의 직업생활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단이 발행하는 자격증이 교부된다. 공단의 ‘상담원양성교육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평가는 筆記試驗(80%)평가와 實習評價(10%), 勤怠評價(10%)로 구성되어 있다. 필기시험은 이론과정 중 평가대상 과목(4과목: 장애인복지론, 직업능력평가, 상담심리, 장애인고용촉진법규)에서 출제되며, 실습평가는 직업재활 실습에 임하는 교육생의 태도와 관찰결과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資格證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습평가에서 각각 4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4) 就業實態

1998년 현재 養成教育 총 이수자는 574명으로 제11기까지 배출되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퇴직하였거나 회사를 옮기는 등의 이유로 인해 현재는 198명만이 職業生活相談員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전국 325개 직업생활상담원 선임대상 사업체 가운데 현재까지 상담원을 선임한 사업체는 258개소이며, 상담원을 선임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는 6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업체별로 월 10만원의 상담원 수당을 6개월 단위로 3년간 지급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表 II-35〉 職業生活常談員 養成現況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이수자 수(명)	111	181	79	44	40	28	43	48	574

資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내부자료, 1998.

나. 其他 職業再活 專門人力

先進國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職業評價士와 職業訓練教師, 再活相談士 등의 직업재활전문인력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직업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식과정이나 자격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며, 또한 현재 국내의 직업재활관련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교육적 배경이나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 근무지, 종사자 수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파악이 가능한 직업재활전문인력별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職業評價士

職業評價士는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職業再活 영역의 핵심적인 전문인력이다. 직업평가 과정은 심리평가, 기초체력평가, 의료평가, 작업평가, 현장평가의 순서로 진행되는 데, 職業評價士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장애인 개인의 직업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이해해야 함은 물론이고, 심리측정 테스트나 상황 평가 같은 다양한 평가 도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專門性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직업평가사에 관한 양성과정이나 자격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대신 韓國障礙人雇傭促進公團에서 최근 ‘직업능력평가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職業評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남부사무소와 부산사무소 2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광주와 대전사무소에도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불과 4명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대부분이 심리학 전공자로서 사전에 공단 내에서 직업재활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하지만 외국의 職業評價士에 준하는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들여온 평가기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障礙人들에게 직업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직업능력평가센터 2개소와 장애인종합복지관 16개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8). 이들 기관에서 職業評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의 규모 및 교육 배경,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의 종류 등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 職業訓練教師

본래 職業訓練教師는 ‘職業訓練基本法’에 근거한 국가자격으로서, 각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이론 등을 실기와 강의를 통하여 가르치고 시험으로 평가하여 취업상담과 진로지도 등을 실시하는 전문 인력이다. 職業訓練教師의 자격체제는 전문교사, 일반교사, 현장훈련교사로 구분되어 있으며, 1997년 말 현재 자격취득자 수가 약 20,000

여명에 이르고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직업훈련교사 가운데 각종 장애인직업훈련시설에서 障 碍 人 들 에 게 직종별 기술 및 이론 등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장애인전담 직업훈련교사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별도의 자격체계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공공직업훈련원 및 인정직업훈련원 235개소¹²⁾, 특수학교(고등부) 100개교, 재활시설 112개소, 근로시설 8개소, 보호작업장 137개소, 장애인복지관 63개소 등 총 654개소에 이르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보건복지부, 1998). 이들 職業訓練機關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전담 직업훈련교사들의 수는 약 2,190명이며 이들은 대개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3) 職業再活相談士

職業再活相談士는 1991년에 결성된 韓國職業再活學會가 운영하고 있는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에 근거한 전문인력이다. 그러나 직업재활상담사는 직업평가사나 직업훈련교사와 달리 명칭과 기능면에서 다소 모호한 감이 없지 않다. 韓國職業再活學會에 따르면, 직업재활상담사는 재활상담사(Rehabilitation Counselor)와 직업평가사(Vocational Evaluation

12) 1998년 12월 현재, 공공직업훈련원은 96개소, 인정직업훈련원은 139개소이나 이중 장애인전용 직업훈련원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의 일산직업전문학교(210명)와 삼육직업훈련원(90명), 덕산직업훈련원(50명) 3개소에 불과하다. 나머지 95개 공공직업훈련원은 주로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정원의 30%범위안에서 생활보호대상자 및 신체장애인을 훈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직업훈련기본법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실적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도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직업훈련 실적을 보면, 수료자 19,200명 중 장애인이 62명으로서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Specialist)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라고 하나 미국의 경우 재활상담사와 직업평가사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으로는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현재 韓國職業再活學會에서 인정하는 직업재활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국내 대학은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등 총 3개교이다. 직업재활상담사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살펴보면, 직업재활 관련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있는 자, 직업재활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으며, 자격체계는 1급정 및 2급 정직업재활상담사, 준직업재활상담사로 구분되어 있다. 資格試驗은 필기시험으로만 치루어지며, 직업재활개론·직업재활상담·직업재활평가 등 5개 과목에서 과목당 최저 40점, 전체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職業再活相談士 자격을 취득한 후 주로 취업하는 분야는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직업상담원) 등이며 1991년 이후 현재까지 2급 정직업재활상담사가 약 150명 가량 배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 職業再活專門人力 需要展望

職業再活專門人力에 대한 수요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괄적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약 14만명의 중증장애인 가운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약 3,000명에 지나지 않으며(권도용 외, 1996; 이달엽, 1995), 전체 재가 장애인 1,029천명 중 15.9%인 164천명이 職業訓練을 받기를 원하고 있고, 15~59세의 미취업 장애인 중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전체의 36.9%인 약 104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정기원 외, 1996).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障礙人의 욕구는 매우 크

며, 또한 職業再活이 장애인재활의 궁극적 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그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서비스 공급자로서 국내 職業再活專門人力의 제반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1998년말 현재, 국내 직업재활 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관 62개소, 재활시설 112개소, 직업재활시설 145개소, 특수학교(고등부) 100개교, 직업훈련시설 235개소 등 총 654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表 II-36 참조). 이들 기관에서 再活相談, 職業評價, 職業訓練 등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인력 중 직업재활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社會福祉(事業)士나 특수교육 교사 등 비전문가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직업재활서비스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자인 직업재활전문인력이 양적으로 절대 부족함은 물론이거니와, 전문성에서도 미흡함을 알 수 있다.

〈表 II-36〉 國內 職業再活 關聯機關 現況

(단위: 개소)

종 류		기관수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45
	종별복지관	17
재활시설	지 체	35
	시 각	10
	청각·언어	14
	정신지체	53
직업재활시설	근로시설	8
	보호작업장	137
특수학교		100(고등부)
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원	96
	인정직업훈련원	139
계		654

資料: 1)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관련 전문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1998.

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지침』, 1998.

3) 보건복지부, 『장애인입소시설현황』, 1998.

4. 社會·心理再活

가. 點譯士

1) 役割

點字은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情報化 社會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도서와 정보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취득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點譯士는 문자로 구성된 자료나 책을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로 번역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최근에 와서 여러 종류의 오디오 테이프와 음성 정보들 그리고 컴퓨터 점자번역 소프트웨어와 광학주사시스템(Optical Scanning System)의 출현으로 시각장애인들이 과거에 비해 필수적인 정보들을 접하기가 훨씬 용이해졌지만, 點譯士는 수학이나 과학, 음악, 그 래픽이나 표 등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點字 역사를 살펴보면, 1894년 선교사이자 의사였던 미국인 Hall에 의해 처음으로 점자가 도입된 이래, 1926년 박두성의 한글점자 창안을 거쳐 현재 사용중인 6점식 점자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1960년대 이후 컴퓨터에 의한 점자생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점역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되었고, 漢字 표현과 대량 복제에 있어서의 기술적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컴퓨터 점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영어원문의 경우 1시간당 55,000어 속도로 점역이 가능하다. 이렇듯 컴퓨터의 출현으로 인해 기존 점역 종사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점역시간이 대폭 단축되었고, 點譯士는 컴퓨터가 하기 힘든 난해하고 전문적인 자료의 번역만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2) 養成過程

현재 국내에서 點譯士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은 없으며, 대신에 韓國盲人福祉聯合會에서 文化觀光部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점역사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점역사를 양성하고 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생긴 점역사 연수과정은 교육생 전원이 한달 동안 합숙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85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다(한국맹인복지연합회, 1998). 과거 盲學校나 점자출판 관련 분야에서 徒弟式 教育으로 점역사를 양성하던 방식에 비하면 한 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資格制度

點字圖書의 보급을 통한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하여 점자번역에 관한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韓國盲人福祉聯合會 주관으로 點譯士 및 矯正士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 1998년 11월에 처음 실시된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은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중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나 학력과 관계없이 해당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시험과목은 국어, 수학/과학, 음악, 외국어 등으로서 각 과목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한 것으로 인정되며, 약 1개월간 교육연수를 이수한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表 II-37 참조).¹³⁾

기존 障礙人福祉法에는 점역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만간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는 障礙人福祉法 개정안¹⁴⁾에서는 점역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년 내에

13) 제1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총 85명이며, 이 가운데 국어과목의 합격자는 43명이다(한국맹인복지연합회, 1998).

14)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62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관

점역사에 관한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表 II-37〉 點譯士 資格制度 概要

구 분	내 용	
응시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 학력에 관계없이 해당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 	
시험과목	국어 수학/과학 음악 외국어	한글맞춤법, 국어점자, 교정법, 점역실기, 컴퓨터 출판 수학점자, 과학점자, 컴퓨터 점자, 점역실기 양악, 국악, 점역실기 영어점자, 점역실기, 점자지도법
합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과목 7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한국맹인복지연합회의 각 과목 교육 수료자는 해당과목당 5점의 가산점을 부여함 · 수학/과학, 음악, 외국어는 국어합격자에 한해 과목합격을 인정함. 	
자격취득자	43명	

資料: 한국맹인복지연합회, 내부자료, 1998

4) 就業實態

視覺障礙人의 점자번역과 관련한 직종에는 점역사와 점자지도사, 교정사 등이 있다. 點譯士와 點字指導士는 주로 正眼人이 담당하며, 점자번역과 점자교육을 겸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矯正士는 시각장애인으로서 點譯資料를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 점자 번역 및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30~40명 정도로서 주로 시각장애관련 특수학교나 점자도서관, 점자출판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대개 點譯業務와 그 외 다른 업무도 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점자도서 제작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구대학교 부설 점자도서관을 비롯하여 서울맹학

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 점자도서관과 視覺障礙人福祉協會에서 사전류, 성경, 교과서류에 국한하여 점자도서를 제작하고 있다(表 II-38 참조).

〈表 II-38〉 國內 點字圖書館 現況

(단위: 명)

구 분	점역사	교정사	회원수
한국점자도서관	4	2	5,052
부산맹인점자도서관	0	0	684
대구대부설 점자도서관	3	1	300
맹인역리학회 부설 도서관	1	1	506
가톨릭점자도서관	0	0	3,200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점자도서관	0	0	900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부설 점자도서관	0	0	3,416
계	8	4	14,058

資料: 대구대학교, 『우리나라 점자도서관의 발전과 개선방안』, 1996.

5) 需要展望

현 수준에서 點譯士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선천적 원인이나 학령기 이전에 시각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특수 교육 등을 통해 점자를 배울 기회가 있으나, 성년 이후에 발생한 시각장애 등으로 인해서 특수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각장애인 중 弱視者를 제외한 전맹 또는 교정시력 0.02미만의 重症障 碍人 27천명 중 점자해독 가능자는 1만명 이하로서, 이들이 점역사의 점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需要對象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¹⁵⁾

현재 點譯士에 의해 발행되고 있는 점자도서만으로는 시각장애인들

15) 일본의 경우 전체 시각장애인의 8.6%인 3만명만이 점자해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Vision Impairments' Resource Network, 1998).

의 다양한 독서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역부족이며, 투표용지의 점자 도입이나 일반 세탁기나 맥주 같은 생활용품에의 점자 표기, 또한 각종 건축물이나 교통시설, 각종 안내문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측면에서 점자가 확대 보급되는 추세에 있음을 볼 때, 點譯士에 대한 수요는 시각장애 인구 규모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편의적 측면도 고려해서 추정되어야 한다.

한편 최근의 컴퓨터 점역 프로그램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독서장치로서 Optacon이나 음성변환컴퓨터 등이 개발되어 있으나 값이 비싸거나 휴대하기 불편하여 사용하는데 제약이 있어서, 현 수준에서 점역사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점역 인력 30~40명으로는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우며, 당분간 전문 點譯士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39〉 點譯士 需要階層

(단위: 명, %)

구 분	수요계층	중도 (0.02)	중등도 (0.04~0.1)	경도 (0.2~0.6)	계
	중도(0.02 미만)				
시각장애인	26,500 (29.4)	10,989 (12.2)	32,805 (36.4)	19,946 (22.1)	90,24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나. 步行訓練士

1) 役割

步行訓練士는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재활센터나 학교, 직장 등에서 步行 및 日常生活이 가능하도록 돕는 재활전문인력이다. 시력을

상실했을 때 가장 먼저 제한을 받는 것은 신체의 이동시 느끼는 불편함이다. 따라서 步行指導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이다.

步行訓練士는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걷도록 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¹⁶⁾ 視覺障礙人의 재활목표가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는 것임을 볼 때, 보행훈련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 불의의 장애를 입게 된 中途失明者에게 있어서 보행훈련은 더욱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보행훈련이 시작된 때는 1970년대로서 초창기에는 인식부족으로 인해 거부감이 없지 않았으나 현재는 그 가치와 실용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신동렬, 1990). 步行訓練士는 직접적인 보행지도 외에 상담 및 평가, 서비스 의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養成過程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步行訓練士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정규교육과정은 없으며, 대신에 韓國視覺障礙人福祉財團(구,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여 양성해 왔다. 국내 최초의 보행훈련사 양성은 1969년 AFOB(American Foundation for Overseas Blind)의 아시아지역 맹인보행교사 양성훈련에 國立再活院 직원이 훈련을 받고 돌아온 것이며, 그 이후 국내에서 보행훈련사 양성을 위한 강습회가 부정기적으로 실시되다가, 1990년부터 연 1회 일주일의 일정으로 정기적인 강습회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盲學校 教師와 시각장애인시설의 보행훈련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補修教育이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1998).

16)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시간 이상의 개별훈련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表 II-40〉 步行訓練士 講習會 實施 現況

연 도	내 용	이수자 수
1973	한국맹인재활센터에서 4개월 강습	6명
1979	한국맹인재활센터에서 강습	7명
1981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14주 강습	14명
1985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 직원강습	6명
1990~1998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에서 1주일간 강습	평균 12~13명

資料: 1)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요원양성방안에 관한 연구』, 1990.
 2)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내부자료, 1998.

3) 資格制度

步行訓練士가 시각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행훈련사에 관한 자격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美國의 경우 보행학을 학부와 대학원(석사과정)에서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보행훈련사가 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 교육재활협회(AER)에서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들 步行訓練士는 학교나 재활기관에서 의사, 물리치료사 등 다른 전문가들과 팀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就業實態

步行訓練士 양성을 위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현재 국내 보행훈련사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보행훈련사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韓國視覺障礙人福祉財團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 보행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은 약 20여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매년 강습회를 통해 평균 12~13명의 보행훈련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전문성의 결여와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다른 업무에 투입되거나 쉽게 이직하기 때문에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들 步行訓練士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은 特殊教師나 社會福祉士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는 고졸학력소지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視覺障礙人에게 보행을 지도하고 있는 곳은 전국의 13개 盲學校와 서울에 있는 3개의 視覺障礙人福祉館으로서 대부분의 보행훈련사는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5) 需要展望

步行訓練士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은 점역사 수요계층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대상의 폭이 조금 더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高度弱視者의 경우 돋보기 등을 사용하여 일반활자로 된 책을 볼 수 있는 반면, 보행시에는 실제적으로 상당한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90천여 명의 시각장애인 가운데 0.02 이하의 重度障礙人은 전체의 41.6%인 37천여 명으로서 이들이 바로 보행훈련사의 보행지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직 보행훈련사 20여 명과 비교할 때, 수요와 공급간에 엄청난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中途失明者가 점차 늘어날 것을 고려한다면, 보행훈련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表 II-41〉 步行訓練士 需要階層

(단위: 명, %)

구 분	수요계층	중등도(0.04~0.1)	경도(0.2~0.6)	계
	중도(0.02 이하)			
시각장애인	37,489 (41.6)	32,805 (36.4)	19,946 (22.1)	90,240 (100.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다. 手話通譯士

1) 役割

手話通譯士는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를 통하여 聽覺障礙人이나 그 관계자에 대하여 의사소통을 해줌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이다. 구체적으로 手話通譯士는 청각장애인과 健聽人(귀가 들리는 사람) 사이에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건청인이 말하는 언어를 수화나 筆談(글을 써서 이야기함), 口話 등의 수단을 통하여 전달해 주고, 반대로 건청인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의 수화를 해석하여 음성언어로 바꿔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聽覺障礙人의 경우 청력 상실 시기나 교육적 배경, 성장기의 환경 등에 있어서 개인별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수단은 다양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手話通譯士는 능란한 수화 구사력 뿐만 아니라 청각장애인이 갖고 있는 언어력 등을 판별하는 능력이나 의사소통 전반을 조정하는 능력 등을 필요로 한다. 聽覺障礙人은 직장 및 교육관계에서부터 회의나 강연회의 참가, 텔레비전 시청에 이르기 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수화통역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도 생명에 관계된 의료관계나 권리를 지키는 재판 등의 사법관계는 전문적인 지식과 함께 상당한 긴장감을 수반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手話通譯士는 일반교양은 물론 전문기관의 파악 등 사회자원을 잘 인식하여 둘 필요가 있다.

手話通譯士의 업무는 청각장애인이거나 그 관계자에 대해 수화통역을 하는 것 외에 수화통역사의 파견 및 조정, 수화통역사의 양성을 위한 기획·조정, 청각장애인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2) 養成過程

현재 국내에서 手話通譯士를 양성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공식 교육 과정은 없으며, 대신에 전국의 16개 韓國聾啞人協會와 韓國聽覺障礙人福祉會, 장애인복지관, 종교단체, 대학 내의 수화동아리, 민간기업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수화통역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들 양성기관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手話通譯士를 양성하고 있는 곳은 韓國聽覺障礙人福祉會로서,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는 1985년 기관이 설립될 당시부터 수화교실을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비장애인들 사이에 수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1년에 2,000여 명 정도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료생들이 초급·중급과정(3개월) 이수자들이고, 전문 수화통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고급과정(6개월) 수료자는 약 30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8). 또한 韓國聾啞人協會는 1998년부터 서울과 전북지회 2곳에서 수화통역사 양성과정(6개월)을 설치하여 1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한국농아인협회, 1998).

3) 資格制度

현재 우리나라에는 手話通譯士에 관한 국가자격은 없으며, 1997년부터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민간자격이 운용되고 있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에는 수화통역사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조만간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¹⁷⁾에서는 手話通譯士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수년 내에 수화통역사에 관한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1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제62조(장애인복지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화통역사, 점역사 등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양성 및 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현재 시행중인 手話通譯士 자격인정 시험은 韓國聾啞人協會의 수화통역 평가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1997년이후 지금까지 총 2회 실시되었다. 자격시험은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청각장애학교 및 청각장애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나 청각장애 관련기관 및 시설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농아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1차 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다. 시험은 1차 이론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있으며, 1·2차 시험에서 모두 합격해야 手話通譯士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이론시험은 국어, 일반상식, 농아인과 사회, 기초수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필기통역, 수화통역, 음성통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수화통역사 자격시험의 평균 합격률은 10~20%이며, 1998년 12월말 현재 총 134명이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II-42〉 手話通譯士 資格制度 概要

구분	내용		
응시요건	만 20세 이상의 성인 남·여		
시험과목	1차시험	국어 일반 상식 농아인과 사회 기초 수화	언어, 어휘·문형, 논설·수필 수화언어, 수화통역, 일반상식 장애, 교육, 복지 어휘, 문장
	2차시험	필기통역 수화통역 음성통역	강연, 상담, 의료, 법률, 예술, 생활 등
시험면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청각장애학교 및 청각장애 관련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청각장애 관련기관 및 시설의 근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농아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자격취득자	134명		

資料: 한국농아인협회, 내부자료, 1998.

한편, 韓國聽覺障礙人福祉會에서는 수화교실 수료생들에게 수료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이들 手話教室 수료생 가운데 일부는 한국농아인협회의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4) 就業實態

국내에 手話通譯士 자격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고,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또한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수화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이나 종교단체, 대학 수화동아리 등의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부분 초급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 참여 동기 또한 자원봉사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들은 전문 수화통역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을 제외하더라도 韓國聾啞人協會의 수화통역사 자격취득자 134명과 청각장애인복지회 산하 4개 수화서클에 소속된 수화통역전문가 100여 명, 그 외 청각장애학교 및 관련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수화통역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의 수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들 전문 수화통역사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手話通譯士는 수화통역을 본업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며¹⁸⁾,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시간제 근무로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수화통역사의 파견 업무를 관장하는 곳은 韓國聾啞人協會와 聽覺障礙人福祉會로서, 수화통역사는 이들 기관을 매개로 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뉴스 등의 방송프로그램이

18) 일본의 경우 1996년 2월 현재, 수화통역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881명이며, 이 중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정식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221명이다 (일본노동기구, 1997).

나 공식적인 회의관계 등으로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방송국이나 회의 주최측은 한국농아인협회나 청각장애인복지회로 수화통역사 파견을 요청하게 되고, 이들 기관은 자신들의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수화통역사 중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여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 韓國聾啞人協會는 현재 전국의 16개 지회에 수화통역센터를 설치하여 각 지회당 3명의 수화통역사를 배치, 총 48명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수화통역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표준 단가가 책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방송 수화통역의 경우 10분당 7~8만원, 회의 수화통역은 3시간을 기준을 했을 때 약 5만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5) 需要展望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체 聽覺障礙人은 196천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10.8%인 21천여명이 手話나 口話, 筆談 등의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적으로 이들 21천 여명이 수화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차적인 수요 계층으로 볼 수 있으며, 수화나 구화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聽覺障礙人도 향후 교육을 통해서 수화 습득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들도 잠재적인 수요계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表 II-41 참조). 또한 障礙人口 증가 추세에 맞추어 수화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表 II-43〉 手話通譯士 需要階層

(단위: 명, %)

구 분	1차 수요계층			잠재수요계층	일반인과 동일	계
	수화	구화	필담	기타1)		
청각장애인	8,418 (4.3)	7,045 (3.6)	5,677 (2.9)	15,466 (7.9)	159,161 (81.3)	195,770 (100.0)

註: 1) 손짓, 발짓을 비롯한 비음성적, 비체계적 의사소통수단의 사용, 또는 의사소통을 거의 또는 전혀 못하는 경우 등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1995.

手話通譯士에 대한 수요는 단순히 聽覺障礙人의 규모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 정도와 관련해서 추정되어야 한다. 사회전반에서 障礙人의 활동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聽覺障礙人이 의료, 법률, 교육,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수화통역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종 방송프로그램과 주요 행사장의 手話通譯士 파견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아울러 수화통역센터를 비롯하여 각종 公共機關 및 障礙人施設 등에 수화통역사가 전담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청각장애인 수의 증가와 사회참여의 확대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등을 감안할 때, 전문 手話通譯士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 再活體育指導者

1) 役割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한계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障礙人들에게 있어서 體育活動은 궁극적인 재활의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국민의 인식부족과 사회의 무관

심 그리고 부모의 무지와 障礙人體育에 대한 경시 등으로 장애인을 위한 再活體育의 적절한 배려가 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다원화되어 가고 障礙人口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감에 따라 재활체육은 障礙人의 완전한 社會統合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재활영역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再活體育 활동은 장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장애로 인한 신체활동의 감소와 함께 오는 건강과 체력의 감퇴를 예방해 준다. 또한 障礙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소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와 함께 비장애인과 자연스럽게 만나는 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참가자들간에 인간적 유대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再活體育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체육 프로그램 및 실기를 지도할 수 있는 再活體育指導者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2) 養成過程

현재 再活體育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은 용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세 곳이다. 1988년 용인대학교(구, 대한체육과학대학)에 특수체육학과가 최초로 개설된 데 이어 1994년에는 한신대학교에, 그리고 1997년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 特殊體育學科가 설치되었다. 그 외에는 숙명여대와 이화여대 체육학과와 서울대와 경북대의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체육과목이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도이다.

비정규교육기관으로서 再活體育指導者를 양성하고 있는 곳은 韓國 障礙人福祉體育會로서 1991년부터 1998년까지 총 5회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212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表 II-44〉 再活體育指導者 養成機關 現況

양성 기관	양성 과정	설치년도	입학정원	이수자 수
용인대학교	특수체육학과	1988년	40명	약 200명
한신대학교	특수체육학과	1994년	60명	19명
한국체육대학교	특수체육학과	1997년	40명	-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¹⁾	1991년	평균 42명	212명

註: 1)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실시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강습회를 재활체육지도자 강습회로 준용함.

資料: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내부자료, 1998.

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강습회 교육과정을 보면, 교육기간은 7~8일간, 교육시간은 62시간, 교육내용은 이론 40시간·실기 22시간, 교육과목은 이론 14과목·실기 9과목, 교육방법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 교육한다. 教育對象은 장애인유관단체나 시설의 체육교사(체육담당), 특수학교 체육교사(체육담당), 장애인경기단체 추천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자격소지자 중 교육 희망자, 일반경기지도자 자격소지자 중 희망자, 일반경기단체 추천자 등이다.

〈表 II-45〉 障礙人生活體育指導者 講習會 修了者 職業 現況

(단위: 명)

특수 학교 교사	장애인 시설 종사자	일반 학교 교사	장애인 체육관련 종사자	교수	장애인 경기단체 종사자	일반 체육관련 종사자	일반 경기단체 종사자	학생	기타	계
34	31	7	19	3	21	11	12	52	22	212

註: 1998년 12월말 기준 통계임.

資料: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내부자료, 1998.

3) 資格制度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再活體育指導者와 관련된 자격제도는 없으며 대신 特殊教育教師(체육전담)자격과 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강습회 이수자에게 발급하는 수료증이 그에 준하는 자격이라고 볼 수 있다. 특수교육교사의 경우 용인대학교 특수체육학과에 개설된 교직과정을 통해 매년 10~15명 정도가 특수교사 자격을 취득하여 1998년 현재 전체 체육전담 특수교육교사 자격취득자가 약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장 명의로 발급되는 강습회 수료증은 정식 자격증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름 그대로 수료증일 뿐이다.

4) 就業實態

障礙人體育 관련 從事者들의 취업실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나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이들의 실태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장애인체육관련 종사자의 주요 근무처는 전국 14개 장애인체육관, 각 지역의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시설, 그리고 특수학교 등으로 추정되고 있다.

관련 종사자가 資格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자격증의 종류도 특수학교 교사(체육전담), 일반 生活體育指導者 또는 강습회 수료증 등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출신 배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체육전공 전문지도자가 전체의 56%, 일반지도자가 40%, 장애인 선수출신이 17%, 자원봉사자가 4%, 그리고 보호자 1%의 순으로 집계되어 비전문가가 障礙人體育分野에 많이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8).

5) 需要展望

障人口의 증가와 더불어 醫療再活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여가 및 문화적 권리로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재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韓國障人福祉體育會가 전국의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참가자 30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참여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에 지도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64%, 지도자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36%로 나타났으며, 지도자의 출신 배경에 대한 설문에서는 체육전공 전문지도자가 56%, 일반지도자가 40%, 장애인선수 출신이 17%, 자원봉사자가 4%, 보호자 1%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97%가 지도자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인체육 전문지도자 양성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의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障人體育專門家로서 再活體育指導者에 대한 수요는 현 수준에서도 상당히 크며, 향후 계속해서 증가하리라고 본다.

마.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1) 役割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는 장애나 그 외 유사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정서적으로 적응상의 문제를 지닌 개인들에게 治療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레크리에이션활동을 통해 부족한 기능을 회복시키고 자신감을 고취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再活專門人力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여흥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오락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반 레크리에이션 지도자와는 엄격히 다르다.

綜合病院이나 재활센터와 같은 醫療分野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의료재활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치료에 적합한 활동프로그램을 개발,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지역사회내의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센터, 특별교육프로그램,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여가활동이나, 운동, 창조적 사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2) 養成過程

1998년말 현재, 전문대학이나 大學(院)에 치료레크리에이션학과가 개설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대신에 일반대학(원) 10개교, 전문대학 7개교, 대학부설 교육원 2개교 등 총 19개교의 社會福祉 相關학과 커리큘럼에 치료레크리에이션이 전공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실질적으로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를 양성하고 있는 곳은 비정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韓國治療레크리에이션協會이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는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협회내에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양성과정은 제1단계 수료코스와 제2단계 자격증 이수코스로 나뉘는데, 자격증 이수코스는 수료코스를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表 II-46〉 治療レクリエーション 指導者 養成過程 現況

과정별	수료코스	전문가 이수코스
교육이수기간	주 1회 2시간 / 총 17주 (연 6회 개설-홀수달 첫째 주)	주 1회 2시간30분 / 총 16주
교육내용	철학 TR 개론 단계별 게임지도방법론 치료 서비스모델 여가교육 서비스모델 레크레이션참여 서비스모델 TR 활동지도법 TR 프로그램 계획법 문서작성방법론 TR 댄스지도론	대상별 기초이론 대상별 TR프로그램 개입 전략 TR 댄스지도방법론 특 강 30시간 실습
수료자 현황 (기수 / 명)	42 / 1,260	18 / 263

註: TR은 Therapeutic Recreation의 약어로서 치료레크리에이션을 말함.

資料: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내부자료, 1998.

각 단계별 教育課程을 살펴 보면, 제1단계 수료코스에서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로서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치료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기초이론과 다양한 활동기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 1회 2시간씩 총 17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다. 제2단계 전문가이수코스에서는 수료코스에서 익힌 치료레크리에이션에 대한 이론과 기법을 토대로 대상별 치료레크리에이션 적용기법을 집중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 1회 2시간 30분씩 총 16주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진다.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 따르면, 98년 10월 현재까지 수료코스는 42차례 개설되어 1,260명이 이수했고, 전문가이수코스는 18차례 개설되어 263명이 과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3) 資格制度

우리나라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 관한 자격은 民間資格으로서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가 자격시험에서부터 자격증 발급 및 자격 관리 에 이르기까지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資格試驗은 전문가 이수코스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기시험 없이 1차 필기시험만 치루어지며,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2급 자격이 부여되는데, 98년 10월말 현재 총 263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또한 전문가 이수코스 수료후 자격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외에 수원여자대학(구 수원여자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와 연계한 자격취득과정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치료레크리에이션 관련 과목 9학점을 이수한 학생에게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2급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制度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없다. 아울러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는 治療레크리에이션 專門家 2급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治療레크리에이션 專門家 1급 양성 과정 및 자격제도를 준비중에 있다.

〈表 II-47〉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資格 規定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치료레크레이션 전문가 2급	1. 전문가 이수코스 수료 후 자격시험에서 전과목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자 2. 수원여자대학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된 치료레크레이션 과목 9학점 이수자
치료레크레이션 전문가 1급	1. 치료레크레이션 전문가 2급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자격제도를 준비중에 있음.

資料: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1998.

4) 就業實態

韓國治療레크리에이션協會 집계에 의하면, 현재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2급 자격을 취득한 263명 가운데 114명이 치료레크리에이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대상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精神障礙人을 위한 치료레크리에이션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 종합병원 정신과 병동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發達障礙兒童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관 내 조기교실, 특수학교, 사설 조기교실 및 특수교육 기관에서, 그리고 老人(일반노인, 뇌졸중노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관 내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실시되고 있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의 급여 수준은 병원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월 4회 기준으로 200,000원 정도이다.

5) 需要展望

대학수준 이상의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공식 양성과정 및 검증된 자격제도가 부재하며, 관련된 연구의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수급전망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다만 非障礙人에 비해 여가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障礙人의 특성을 감안할 경우 치료와 여가를 겸한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 수요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측된다.

美國 勞動統計局의 자료에 따르면, 1996년 현재 미국에는 약 38,000명의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까지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수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 배출된 국내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는 1998년 12월 현재 263명이다.

〈表 II-48〉 韓國과 美國의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 數 比較
(단위: 명)

국 가	연 도	치료레크레이션지도자 수	1인당 인구 수
한 국	1998	263	175,319
미 국	1996	약 38,000	약 7,211

資料: 1) 한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 내부자료, 1998.
2) 미국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ATRA), 1998.
3) UN, 『세계인구전망』, 1998.

질적 수준의 측면을 무시한 채, 단순 수치 비교를 한다는 것이 무리가 따르지만, 우리나라의 현 수준 및 장래 수요 예측을 위해 治療레크리에이션指導者 1인당 인구수를 기준으로 미국과 비교해 보면, 韓國은 치료레크레이션지도자 1명당 175,319명, 美國은 7,211명이다. 이는 양국의 복지 수준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서비스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결함을 가진 사람, 즉 모든 障礙人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향후 障礙人口의 지속적인 증가와 재활을 위한 사회여건의 점진적인 개선 등을 예상해 볼 때,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에 대한 需要는 계속 증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表 II-49〉 國內 再活專門人力の 概要

전문인력	재활 영역	양성과정		자격제도			종사자 수	관련법률
		양성기관	교육 기간	종류	운영 주체	취득 자수		
재활의학 전문의	의료	재활의학전공 의 수련병원 - 57개소	4년	국가 자격	보건 복지부	376명	339명	의료법
물리치료사	의료	· 전문대학 - 22개교 · 4년제 대학 - 9개교	· 3년 · 4년	국가 자격	보건 복지부	13,035 명	약 7,500명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작업치료사	의료	· 전문대학 - 1개교 · 4년제 대학 - 1개교	· 3년 · 4년	국가 자격	보건 복지부	372명	192명	의료기사등 에관한법률
보장구기사	의료	전문대학 - 1개교	2년	민간 자격	한국 보장구 협회		460~ 600명	
언어치료사	의료	· 4년제 대학 - 1개교 · 대학원 - 4개교 · 민간학회 - 2개소	· 4년 · 2년	민간 자격	· 한국 언어청각 임상학회 · 한국 언어치료 학회	518명	약 700명	
청각임상가	의료	대학원 - 1개교	1~2년	민간 자격	한국언어 청각임상 학회		약 550명	
특수교육교사	교육	4년제 대학 - 10개교	4년	국가 자격	교육부		7,896명	초·중등 교육법
직업생활 상담원	직업	한국장애인고 용촉진공단	2주	민간 자격	한국장애 인고용촉 진공단	574명	198명	장애인고용 촉진등에관 한법률
직업훈련교사	직업	기능대 등		국가 자격	노동부	22,133 명	약 2,200명	직업훈련 기본법
직업재활 상담사	직업	· 4년제 대학 - 3개교	4년	민간 자격	한국직업 재활학회	약 150명		

〈表 II-49〉 계속

전문인력	재활 영역	양성과정		자격제도			종사자 수	관련법률
		양성기관	교육 기간	종류	운영 주체	취득 자수		
점역사	사회 심리	한국맹인복지 연합회	1개월	민간 자격	한국맹인 복지 연합회	43명	30~40명	
보행훈련사	사회 심리	한국시각장애 인복지재단	1주일				약 20명	
수화통역사	사회 심리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등	3~6개월	민간 자격	한국농아 인협회	143명		
재활체육 지도자	사회 심리	· 4년제 대학 - 3개교 · 한국장애인 복지체육회	· 4년 · 7~8일	자격제도 없음(대 신에 한국장애인복 지체육회에서 강습 회 이수자에게 수 료증 발급)		212명 (강습회 수료자 수)		
치료레크리에 이션 지도자	사회 심리	한국치료레크 레이션협회	33주	민간 자격	한국치료 레크레이 션협회	263명	114명	

Ⅲ. 外國의 專門人力 養成 및 資格制度

이 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專門人力 양성이 이루어지고 資格制度가 확립되어 있는 先進 外國의 예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障礙範疇가 넓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이 높으며, 실제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再活專門人力의 양정도 주로 학부과정 이상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은 관련 협회 등의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특히 障礙人의 재활은 보다 숙련되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관련 직종은 전문성에 대한 社會的 認定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재활관련 인력의 전문성 배양과 자격체계가 장애인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할 수 있는 美國과 우리나라와 장애인복지 여건과 발전과정이 유사한 日本의 재활전문인력 양성체계, 자격요건과 수행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美國¹⁹⁾

가. 再活相談士

1) 養成體系

再活相談士(Rehabilitation Counselor)²⁰⁾가 되기 위해서는 再活相談學

19) Fredric K. Schroeder, *Rehabilitation-related Professions*, 1997(인터넷: www.nchrtm.okstate.edu/files/career97.txt)을 요약, 발췌하였음.

석사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재활상담학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18개월에서 2년 동안을 수학과 600시간의 臨床經驗이 필요하다. 대학원생은 일반적으로 학부에서 재활서비스, 심리학, 사회학이나 다른 人文科學을 전공한 학생들이다. 현재 미국에는 90여 개의 재활상담학 석사 프로그램이 있다.

2) 資格制度

정부에서 공인한 再活相談士 과정에 등록한 대학원생은 공인된 인턴 프로그램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재활상담사 자격위원회(CRCC)가 규정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자격증은 대부분 고용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개인의 교육과 능력을 나타내는 전문가 認證書가 된다. 많은 주에서는 공인 전문상담사 자격증(Certification for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LPCs)도 아울러 수여하고 있다.

3) 機能 및 役割

再活相談士는 신체적, 감정적 혹은 정신적으로 장애상태에 있는 사람이 독립적이거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피고용인이 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서 인터뷰, 개인 평가, 의학적 및 심리학적 보고 평가, 직업보도, 직업소개, 상담과 개인적 적응을 위한 안내를 해야 하고, 障礙人을 위해서 환경 및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와 함께 일을 수행한다.

4) 從事分野

再活相談士는 주립 직업재활기관, 장애인 독립생활센터, 재활 시설,

20) 재활상담사를 직업소개 전문가, 정신상담가, 사례관리자(Case Manager), 혹은 직업상담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음주·마약 프로그램, 정신건강센터, 사립 비영리 재활기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相談士가 학습장애, 척추장애, 정신질환자, 두뇌 부상자, 알코올중독자나 마약 중독자와 일하는 등 전문분야를 살려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視覺障礙 再活要員

1) 養成體系

일반적으로 視覺障礙人 전문가 과정(Rehabilitation in the Blind)은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치면 적응 및 보행 전공의 再活學이나 교육학의 학사 혹은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현재 미국에는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협회(AER: The Association of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에 서 승인한 2개의 학부와 10개의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다. 재활교사 훈련 프로그램은 대체로 대학원에 개설되고 있으며, 일부 학부에서 재활교사나 보행전문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여러 기관 및 단체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再活相談士를 고용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직업을 가지려면 재활학 또는 시각장애인과 관련된 특수훈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력 선발에 있어서는 석사학위 취득자가 선호되고 있다.

2) 資格制度

정부에서 인정한 대학의 졸업생은 시각장애인 교육 및 재활협회(AER)로부터 再活教師나 步行訓練士, 弱視治療士(Low Vision Therapist) 등의 자격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再活相談士는 일반 재활상담사와 같은 유형의 자격증과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3) 機能 및 役割

步行訓練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독립적이고 안전한 보행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을 훈련시키게 된다. 이들의 기능 및 역할은 면담, 평가, 병원 의뢰, 직접적인 보행서비스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民間病院에 취업하여 약시자의 시력훈련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再活教師는 개인평가, 독립된 생활을 위한 기술교육,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4) 從事分野

再活教師와 步行專門要員은 주립이나 사립 재활기관(重度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립 직업재활기관), 弱視者를 위한 민간병원과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에게 시설과 기관에서 계약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再活相談士는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전문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주립재활기관에서 근무한다.

다. 再活工學家

1) 養成體系

再活工學家(Rehabilitation Engineer)가 되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2년제 再活工學 석사학위를 받아야 한다. 석사학위 프로그램 이수 위해서는 학부에서 필수적으로 工學士(의료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학위를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재활기관에서 인턴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 현재 약 8개 대학에서 再活工學을 전문으로 교육시키고 있다.

2) 資格制度

再活工學家 및 재활기술요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는 없으며, 대학원생에게 그들이 일하는 주의 등록된 전문 공학가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다.

3) 機能 및 役割

再活工學家는 장애인이 독립성을 갖도록 하는 補裝具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휠체어와 보행기, 체형교정기구, 독립적인 생활능력 배양, 작업장 개조, 운전석 개조, 의사소통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는 팀원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들은 장애인의 개인적 독립성과 기능 능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4) 從事分野

再活工學家는 공공기관이나 사립 재활기관, 재활시설, 자원봉사기관 (United Cerebral Palsy and Easter Seals 등), 개인기업체에서 일할 수 있고, 상담가로 일할 수도 있다. 고용기회는 매우 양호하고 점차 더 증가할 전망이다.

라. 聽覺障碍 再活要員

1) 養成體系

많은 주에서 聽覺障碍再活要員(Rehabilitation of the Deaf)이나 청각 장애를 위한 再活相談士 채용에 있어 석사학위를 요구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재활상담사 훈련 프로그램을 받은 졸업생을 고용하고 있으나, 청각장애 및 관련 서비스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더 많은 고용기회가 주어진다.

2) 資格制度

聽覺障礙再活專門家は 일반 再活相談士와 동일한 자격증을 가질 수 있다. 즉, 공인재활상담가나 다른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3) 機能 및 役割

업무로는 평가, 직업적 적응 상담, 독립적인 삶의 기술 훈련, 수화 통역, 통역사 소개, 대변역할, 직업소개 등이 있다. 聽覺障礙人과 일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보청기기에 대해 익숙해야 하고, 수화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4) 從事分野

聽覺障礙再活專門家は 대학, 재활시설, 정신건강 기관, 장애인 독립 주거기관, 지역서비스 센터 등 다양한 기관에 고용된다.

마. 手話通譯士

1) 養成體系

청각장애인을 위한 手話通譯士로 고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통역교육학 분야의 準學士나 學士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2) 資格制度

많은 州나 學校에서는 수화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手話能熟度 평

가를 실시하고 있다. 취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화를 위한 公認資格證이나 주 단위의 심사제도를 통과할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유리하다. 특히 청각장애인 통역사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인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 자격증은 청각장애인 通譯登錄所(RID: The Registry of Interpreters for the Deaf, Inc.)에서 제정한 것으로서, RID는 현재 2개의 공인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通譯士 자격증(CI)과 音譯士 자격증(CT: Certification of Transliteration). 약 30개의 주에서는 공인자격증을 받을 수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통역사를 위해 ‘자격심사테스트’(QAST: Quality Assurance Screening Tests)를 실시하고 있다.

3) 機能 및 役割

手話通譯士는 의사전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청각장애인 개인이나 집단과 직접적인 계약을 통해 일을 한다.

4) 從事分野

手話通譯士는 종종 계약제로 고용되지만, 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기회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바. 職業評價士

1) 養成體系

職業評價士(Vocational Evaluator)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학 학이나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인정된 경력과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보다 전문화된 전공을 한 碩士學位 소지자가 선호되고 있다.

2) 資格制度

職業評價 전공자는 공인된 직업평가사 국가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직업적응 및 직업평가전문가위원회(CCWAVES: The Commission on Certification of Work Adjustment and Vocational Evaluation Specialists)에 신청해야 한다. 직업평가사 자격증은 CCWAVES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훈련 및 전문적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수여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職業評價士를 위한 면허증이나 다른 전문자격증을 주고 있지는 않으나, 이러한 주에서는 전문적인 자격요건의 기준으로 CVE와 CWA를 채택하고 있다. 재활시설 인증위원회(CARF: Accreditation of Rehabilitation Facilities)는 직업평가 프로그램을 인증할 때 공인직업평가사(CVE)를 요구한다.

3) 機能 및 役割

직업평가사는 障礙人의 직업 선택을 돕기 위해서 직업을 탐구하고 평가하는 등의 종합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신체 및 정신적 장애를 이해해야 하고, 평균 이상의 의사소통기술을 갖고 있어야 한다. 評價士는 심리측정 테스트, 상황 평가 같은 다양한 평가 도구를 선택, 관리, 해석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종종 표준 도구를 수정하기도 하고 효과적으로 지역의 노동시장에 대응하며,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구를 개발하기도 한다.

4) 從事分野

職業評價士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 통합시키도록 주력하는 다양한 기관에 고용된다. 대표적인 고용기관은 주립 직업재활기관, 민간재활기관, 지역사회 독립생활센터, 정신병 및 중독치료센터, 뇌손상

치료센터, 병원, 공립학교, 정신지체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작업활동 센터(work activity centers), 교정시설 등이다.

사. 物理治療士

1) 養成體系

공인된 物理治療士(PT: Physical Therapist)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 개설된 학력인정 물리치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석사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경쟁은 치열한 편이다. 필수과목으로는 物理治療의 이론과 실제, 인체해부학, 신경과학, 의료신체운동학이 있다.

한편 補助物理治療士(PTA: Physical Therapist Assistant)가 되기 위해서는 학력이 인정된 2년제 대학에서 準學士 학위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전문학교나 2년제 대학에 있다.

2) 資格制度

50개 州 모두에서 免許證을 필요로 한다. 학력인정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 일하기 원하는 주의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주는 공인자격시험을 요구하고 있으나 합격기준과 다른 필요 조건은 주마다 다르다. 補助物理治療士의 경우 몇몇 주에서는 자격증이 요구된다.

3) 機能 및 役割

物理治療士는 의료팀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사고, 질병, 출생결함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장애를 지니게 된 사람을 평가하고 치료한다. 이들은 대체로 정형외과, 소아과, 노인병과, 신경학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치료방식은 치료운동, 마사지, 열, 저온, 전기치료, 초

음파치료 등이며, 물리치료사는 또한 재활서비스를 계획, 관리, 평가하고 자문 및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補助物理治療士는 물리치료사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4) 從事分野

자격을 갖춘 物理治療士의 취업기회는 매우 광범위하다. 美國 勞動統計局은 물리치료사의 수요는 2000년까지 8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리치료사는 병원과 재활센터 같은 전통적인 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사립기관, 스포츠 재활센터, 양로원, 재가 보건기관, 사업체에서도 일할 수 있다. 또한 행정가, 연구자 및 교사로서도 일할 수 있다.

아. 再活專門醫

1) 養成體系

再活醫學(Rehabilitation Medicine)을 전공한 의사나 관련분야를 전공한 再活專門醫는 정형외과나 학력인정 일반 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한다. 재활전문의는 신체외학과 재활학 분야에서 인준된 레지던트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강의나 연구를 원하는 再活專門醫는 생화학이나 생체의료공학에서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2) 資格制度

재활전문의 자격은 미국 재활의학회에서 인증하는데, 1995년 현재 총 4,642명이 재활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機能 및 役割

再活專門醫의 업무는 상해, 질병, 선천적인 장애로 제한받은 신체의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재활의학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재활전문팀은 의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학자, 의지보조기기사 같은 재활전문가와 함께 장애인에게 자가치료, 보행, 직업적 재활과 일상적인 활동을 위한 기능적 능력을 증가시키는 여러 학문을 종합한 치료를 제공한다.

4) 從事分野

재활전문의는 병원, 의료재활시설, 사립 및 공립 재활기관이나 사무소, 연구센터, 의과대학을 포함한 대학교에서 일한다. 재활전문의는 신경근병, 척추상해, 뇌손상, 기타 관련 전문분야에서 2년 혹은 3년에 걸쳐 과정후 연수를 받는다.

자. 再活心理士

1) 養成體系

再活心理士(Rehabilitation Psychologist)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재활이나 임상학, 혹은 교육심리학 분야의 碩士學位를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더 선호한다. 몇몇 박사학위 프로그램은 재활, 행동의학, 건강심리학, 신경심리학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턴이 되어 상기의 분야를 종합하여 배울 수도 있다. 또한 재활학과 再活相談學의 박사과정 프로그램이 있다. 再活서비스廳(RSA: Rehabilitation Services Administration)은 공립 및 사립 비영리 재활기관이나 시설에 심리 및 평가서비스 전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재활심리학 분야의 사전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 資格制度

개업을 하기 위해서 再活心理士는 자격증과 개업을 원하는 주의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몇몇 州에서는 개업조건으로서 석사학위 수준의 자격을 요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대부분의 州에서는 석사학위 소지 再活心理士는 자격증을 소지한 심리학자의 감독 하에 고용되어 일을 하면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재활심리사가 병원, 정부서비스 기관, 대학 등의 기관에 소속되어 일하는 경우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3) 機能 및 役割

再活心理士는 장애에 대한 장기간의 개인적, 사회적, 직업적 조절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장점 및 단점을 측정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심리학적, 신경심리학적, 직업적, 임상 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치료 또는 여러 학문을 종합한 계획이나 장애측정에 도움을 준다. 상담심리치료는 또한 개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움을 준다.

4) 從事分野

再活心理士는 공립 및 사립 재활센터, 병원, 정신병 및 뇌손상 치료센터, 지역 정신보건센터와 학교기관 같은 다양한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차. 作業治療士

1) 養成體系

등록된 作業治療士(OTR: Registered Occupational Therapist)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전역에 소재한 대학에서 작업치료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학사학위를 수여하는데,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는 몇몇 학교의 석사학위나 자격증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있다. 각 프로그램의 교과내용은 생물학과 행동과학, 인간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작업치료 이론과 실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臨床經驗을 필수로 하고 있다.

公認補助作業治療士(COTA: Certified Occupational Therapy Assistant)가 되기 위해서는 인정된 교육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 2년제 대학의 준학사학위가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인체의 구조와 기능, 심리학, 작업치료 원리와 기술 그리고 임상경험으로 되어 있다.

2) 資格制度

作業治療士가 되기 위한 소기의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美國 작업치료 자격증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3) 機能 및 役割

재활센터, 시설, 병원에서 일하는 작업치료사는 상해환자용 부목을 설계하고 제작하거나, 회복단계에 있는 뇌졸중환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감독하며, 또한 심장질환자가 자가보호 및 가사노동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심장박동과 에너지 필요량을 측정한다.

精神患者를 돕기 위해 고용된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개인 및 사회적 행위 기술 습득을 돕는 집단 및 개별 치료활동 관리의 역할을 한다. 일반적으로 작업치료사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하며, 신체 및 발달상의 문제, 감정적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연령층의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4) 從事分野

作業治療士의 취업전망은 매우 밝으며, 美國 勞動部의 보고에 의하면 작업치료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전문인력 중 하나로 직접적인 환자치료뿐만 아니라 행정, 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작업치료사는 재활센터, 병원 등의 다양한 재활관련 기관에서 일한다. 또한 독립적으로 개업하거나 일할 수 있고, 양로원, 공립 및 사립 학교, 재가 보건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카. 言語病理士 및 聽覺士

1) 養成體系

公認 言語病理士(Speech-Language Pathologist)나 公認 聽覺士(Audiologist)로 일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장애나 聽覺學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몇몇 州에서는 비공인 청각사와 언어병리사가 학사학위만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일반 교과목과 임상실습과목 모두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언어병리학의 교과목은 발음법, 언어, 호흡, 인식력 및 목소리에 초점을 둔다. 聽覺學의 교과목은 귀의 구조와 기능, 보청기, 청력장비의 진단시험과 측정 및 사용으로 되어 있다. 임상실습과목은 청력장애환자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資格制度

이 분야의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美國 言語 聽覺協會(ASHA)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임상 연구기간(CFY: Clinical

Fellowship Year)을 마쳐야 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면허증을 요구하고 있다. 청각장애인 보청기 착용을 돕기 위해서는 별도의 면허증과 자격증 시험이 필요하다.

3) 機能 및 役割

言語病理士와 聽覺士는 말하기, 언어, 음성, 호흡, 인식력 및 청력 장애가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 즉, 뇌졸중, 뇌손상, 퇴행성 질환, 학습장애, 집중력장애 등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일한다. 이들의 목표는 환자의 기능을 향상시켜 그들의 환경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言語病理士는 평가, 목표설정, 치료수행, 환자 및 가족 교육, 환자의 재통합을 담당한다. 청각사는 이비인후과 의사나 관련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장애인의 청력을 평가하고 보청기나 후속 치료에 대해 조언을 한다.

4) 從事分野

언어병리사 및 청각사는 병원, 재활센터, 양로원, 지역보건기관, 시설개업소, 공립·사립 학교와 대학교 등에서 일한다.

타. 再活看護師

1) 養成體系

전문적인 再活看護師(Rehabilitation Nurse)가 되기 위해서는 공인 간호사(RN) 자격증이 필요하다. 자격증 이수를 위한 필수 교육을 받으려면, 고교졸업장, 준학사, 학사학위 중에서 한 가지를 소지하여야 한다. 고교졸업장이나 준학사 학위자도 재활간호사가 될 수 있으나 학

사학위 소지자가 더 선호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활간호분야에서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기도 한다.

2) 資格制度

再活看護師로 일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자격제도는 갖추어져 있다. 재활간호병원에서 2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간호사는 資格試驗을 볼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 재활간호사(CRRN: Certified Rehabilitation Registered Nurse) 자격증을 받는다.

3) 機能 및 役割

再活看護師는 재활상담사, 사회사업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재활전문의와 협동적으로 일하면서, 여러 학문을 포괄한 팀의 성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활간호사는 장애인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 환자를 교육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과 가족, 친구, 고용주와 함께 일한다. 이들은 또한 기금과 지역 지원프로그램을 관리한다.

4) 從事分野

재활간호 분야의 취업대상영역은 매우 넓다. 재활간호사는 여러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데, 재활센터, 병원, 장기보호시설, 양로원, 개인 병원, 지역 및 정부 기관, 보험회사, 사기업체 등이다.

파. 義肢·補助器 技士

1) 養成體系

義肢·補助器 技士(Prosthetics/Orthotics)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義肢學

이나 補助器學 혹은 관련분야의 학사학위를 소지해야 하고, 이와 함께 장기간(4~12개월)의 자격증 프로그램을 마쳐야 한다. 교과목은 기초단계와 전문단계의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기초단계에서는 물리학과 생물학을 이수하고, 인문과학 분야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과정은 학교 내에서 이수한다. 이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관련 자연과학을 가르치고, 전문적 기술을 훈련시킨다. 학생들은 이론 및 임상 과목들을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직종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강화하게 된다.

2) 資格制度

모든 필수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은 自然科學 學士學位와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부여 받는다. 의지보조기 분야나 공인 프로그램을 끝마친 후, 졸업생은 공인기사의 감독아래서 임상 경험을 1,900시간(약 1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마치면 美國義肢補助器資格協會(ABC)의 규정에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협회의 시험 중 하나에 합격하면, 公認 義肢技士(CO: Certified Orthotist)나 補助器技士(CP: Certified Prosthetist)가 된다. 협회의 2가지 시험 모두에 합격하면 공인 의지보조기기사(CPO)가 된다.

3) 機能 및 役割

公認 義肢技士나 補助器 기사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절단된 사지(의지)를 대신하거나 척추나 사지에 보조기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담당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진단, 처방, 의지거나 보조기의 맞춤 제작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의지 및 보조기 기사는 민간병원에서 전문적 의료치료팀의 일원으로서 장애질 환 및 상해, 선천적인 결함을 갖고 있는 환자의 재활을 위해 다른 전문

인력과 협력하여 일을 한다. 또한 의지 및 보조기에 대해서 환자나 환자 가족, 다른 재활치료 전문가와 대중을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4) 從事分野

義肢補助器 분야의 학위 소지자는 국가 전역에서 일할 수 있고 졸업 전에 취업의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학중에 개인병원에서 경험을 쌓게 되면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하게 되고 병원에서 연수받는 동안 기술수준을 높일 수 있다.

하. 治療레크리에이션 專門家

1) 養成體系

일반적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Therapeutic Recreation Specialist)가 되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治療學의 학사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를 위한 석사와 박사학위 프로그램도 있다. 학과목은 레크리에이션 치료 철학, 레크리에이션의 기초, 행정학, 심리학, 신체과학, 기타 관련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2) 資格制度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 자격증(CTRS: Certification as a Therapeutic Recreation Specialist)은 국립치료레크리에이션협회를 통해서 수여된다. 국가자격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필수교육을 마쳐야 하며, 이 자격증은 선택적인 자격증 프로그램이지만, 치료레크리에이션 전문가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몇몇 주는 州立資格證이나 國立證明書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한다.

3) 機能 및 役割

레크리에이션 治療要員으로 고용된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감정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독립적인 여가를 즐기도록 하는 일을 담당한다. 치료요원은 여가선용을 통해서 환자들의 前治療 과정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개인적 치료, 여가교육, 지역통합, 여가에 대한 가치 명료화, 질적인 여가활동의 참여 기회 등을 제공한다. 이들은 개인이 여가를 활용하는 기술을 습득하여 삶의 질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從事分野

레크리에이션 治療要員은 다양한 재활시설, 레크리에이션담당부서, 심리 및 뇌손상 치료센터, 교정시설, 캠프, 주립기관, 공립 및 사립 종합재활센터, 지역정신보건센터, 독립생활시설 같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表 III-1〉 美國의 再活專門人力 概要

구분	교육요건	자격증 및 수여기관	수행업무	연봉수준
재활 상담사	-재활상담학 석사학위 취득자(18~24개월간 교육 및 600시간의 임상경험 요구) -학부전공은 재활서비스, 심리학, 사회학, 관련학과	-일정 현장실습기간과 자격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재활상담자격 위원회(CRCC)가 자격증 부여	-장애인을 독립적, 자조적 시민으로 성장케 함. -수행업무: 면접, 직업보도, 취업알선, 적응상담 및 지도	\$18,000 ~ \$24,000
시각 장애 재활 요원	-재활학 또는 교육학 학사·석사 취득자(보행학 전공) -미국내 맹인·시력장애인재활요원협회(AER) 승인대학은 2개 학부와 13개 대학원 소재	-시각장애인재활교육 협회(AER)가 보행요원 또는 시력장애재활상담사자격증 부여	-시력장애인의 안전 보행훈련 -수행업무: 면접, 평가, 의뢰, 보행교육 직접실행	\$20,000 ~ \$30,000

<表 III-1> 계속

구분	교육요건	자격요건	수행업무	연봉수준
재활 공학자	-재활공학 또는 재활 기술학 석사학위 취득자(재학중 재활기관에서 현장실습 요구) -학부전공은 생체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기계공학	-특정 자격증 없음. 단, 근무분야에서 공인엔지니어가 될 것을 권장하고 있음.	-장애인 보장구 고안, 개발, 장착에 참여 -수행업무: 휠체어, 체형교정기구, 작업장 조정, 운전적응기계, 의사소통기구 고안 및 개발	\$35,000~ \$50,000
청각장애 재활 요원	-청각장애 또는 관련 학과 전공의 석사학위 소지자	-청각장애재활요원 자격은 일반재활상담사 자격과 동일함. 일반재활상담사 자격증으로는 CRC, NCC 등이 있음.	-수행업무: 평가, 직업 적응상담, 독립생활훈련, 통역 및 기타 -수화능력과 다양한 보청기구활용	\$18,000~ \$30,000
수화통역사	-준학사 또는 학사 이상	-RID에서 통역사와 음역사 자격증 부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기능	-
직업평가사	-재활학 학사·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자(이 경우 장기간 현장경험과 특별훈련 요구)	-교육요건, 훈련, 전문적 경험이 구비되고 국가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직업적응평가전문가위원회(CCWAVES)가 직업평가사(CVE) 자격증 부여	-수행업무: 체계적 개별적 장애인 대우·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장애에 대한 지식, 대화소통기술, 각종 평가도구의 선택, 운영, 해석 능력을 소지해야 함.	\$23,000~ \$30,000
물리치료사	-석사학위 취득자. 학부에서 관련학과 전공, 필수과목 이수, 의료시설에서 실습경험 요구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물리치료사 자격증 부여	-수행업무: 정형외과, 소아과, 신경외과 등 -치료방법: 물리치료, 마사지, 촉진, 냉온, 전기치료, 초음파 등 적용	초임 \$38,000~ \$39,000
재활 전문의	-재활의학 전공(일반의학 이수, 재활레지던트 기간 요구) -강의나 연구활동 수행요건은 생화학이나 생물의학의 석사·박사 취득자	-미국재활의학위원회(ABPMR)에서 자격증 부여 -'95년 현재 4,642명	-수행업무: 일반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재활치료사, 심리학자, 재활전문가, 보장구전문가 등 재활전문인들과 팀치료	\$30,000~ \$70,000

〈表 III-1〉 계속

구분	교육요건	자격요건	수행업무	연봉수준
재활 심리사	-미국심리학회(APA) 인정 박사과정 수료. -재활, 행동의학·의료 심리학, 신경심리학 전공	-주정부에서 심리사자격증 부여 -주에 따라 공인심리사 밑에 활동하는 석사급 심리사에게 자격증 부여	-수행업무: 장애인의 심리적, 신경적, 직업 적응력 평가, 장애판단, 상담 및 심리치료 실행, 임상 또는 연구활동 등	석사급: \$20,000~ \$30,000 박사급: 초임 \$40,000
작업 치료사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생물학, 행동과학, 인간성장 및 발달, 직업치료이론 이수 및 실습에 초점	-전국작업치료자격위원회(NBCOT)의 자격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물리적, 발달적, 정서적 문제와 관련 서비스 제공	초임 \$38,000
언어 병리사 및 청각사	-언어병리학, 청각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자	-임상훈련과 국가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미국언어청각협회(ASHA)가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능력 개선 -수행업무: 말, 언어, 소리, 호흡, 인지, 청능문제에 개입	평균 \$40,000 이상
재활 간호사	-4년제 또는 2년제 일반간호대학 수료 -재활간호학 석·박사 학위 취득자 있음.	-2년간의 재활간호 경험이 있고 시험에 통과하는 일반간호사에게 공인재활간호사(CRRN)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상해, 질병, 합병증의 극소화를 통한 독립기능강화	초임: \$25,000 평균 \$33,000~ \$43,000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보조기학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간 자격과정 수료자 -학사과정 외에 전국 의지보조기위원회(NCOPE)인정 1년간 레지던트훈련 요구	-전국의지보조기위원회(NCOPE)인정 교육요건과 1,900시간의 임상실습을 완료한 자에게 미국의지보조기위원회(ABCOP)에서 자격증 부여	-신체장애부위의 보조 및 대체기구 고안 및 개발	초임 \$18,000~ \$23,000
치료 레크레이션전문가	-레크레이션치료 학사학위 취득자. 석·박사학위 취득 가능 -수강과목은 레크레이션치료철학, 레크레이션재단, 행정학, 심리학, 물리학, 기타 관련학	-협의회 시행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전국 레크레이션치료자격협의회(NCTRC)에서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독립레크레이션기능 강화 -개별 치료, 레크레이션교육, 지역사회 통합, 레크레이션활동참여 지도	평균 \$35,954

2. 日本

가. 言語聽覺士

日本の 言語聽覺士는 언어치료사와 聽能士로 분리된 채 각기 제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1989년부터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어 ‘醫療言語治療士’ 자격의 확립을 추진하여 왔다. 法 제정 이후에는 言語聽覺士로 전환되었고, 음성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언어훈련, 검사 및 지도, 기타 원조를 행하는 전문인력으로서 국가시험에 의해 후생대신이 발급하는 언어청각사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言語聽覺士 수험자격은 지정양성소에서 3년간 이수하거나 대학교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外國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면허를 취득한 자, 그리고 실무경험 5년 이상인 자 가운데 언어청각사 國家試驗을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언어청각사 면허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 현재 協會公認의 양성과정이 총 14개교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활동중인 언어치료사는 약 2,500여 명이며, 전체 종사자의 2/3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의 주요 근무처는 병원 및 복지시설이며, 처우 수준은 국공립 기관의 경우 공무원 급여에 준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민간차원(日本言語療法士協會, 日本聽能言語治療士協會)에서 언어치료사와 청능사 등으로 구분하여 수료증을 발급하였고 현장에서의 양성은 국립신체장애인재활센터에서 이루어졌으나 법률상의 자격이나 공인된 자격증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한옥희, 1990; 박혜숙, 1992). 따라서 자격증이 없이도 경력이나 학력으로써 인정되면 언어치료사나 聽能訓練士로 처우받아 왔다.

1997년 12월 ‘言語聽覺士法’이 제정되고 1998년 7월부터 시행되어 제1회 시험을 1999년 2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음성기능, 언어

기능 및 청각에 관계하는 再活專門人力으로서 자격을 정하고 그 자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그 업무가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규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다.

언어청각사 국가시험 과목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치과의학, 언어청각의학, 심리학, 음성언어학, 사회복지, 장애학 총론, 언어발달장애 등이다. 한편 이 법 제정 이전 종사자들은 일정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즉, 병원, 진료소, 기타 후생성이 정하는 시설에 근무하던 사람은 일정기간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후생성에서 개최하는 강습회를 이수한 사람에게도 자격을 부여한다.

나. 義肢補助器技士(義肢裝具士)

義肢·補助器技士는 1970년대 말까지 도제식의 기술전수를 통해 기사양성이 이루어졌으나 1982년 국립신체장애인재활센터내에 義肢裝具士 양성과정을 설치하여 3년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박운서, 1990). 이후 나고야의 전문학교, 구마모토 등에 5개교가 운영되고 있다(3년제 정원 10~20명). 일본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의지·보조기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교육하고 있다.

1987년 제정된 ‘義肢裝具士法’에 의해 이듬해부터 의지·장구(보조기)사에 대한 국가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義肢裝具士가 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후 문부성이나 후생성 대신이 인정하는 의지장구사 지정학교에서 3년간 義肢裝具學을 전공한 자, 관련 분야의 양성소에서 지정과목을 이수한 자, 의지장구 제작에 관계되는 기능검정 합격후 지정학교 또는 양성소에서 1년 이상 지식을 습득한 자만이 국가면허시험을 볼 자격이 있다. 한편 법 시행초기에는 단계적인 經過措置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에게 소정의 강습회(의학 52시간, 공학 16시간, 의지장구학 36시간, 임상실습 30시간)를 이수토록 하여 1993

년까지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物理治療士

物理治療士(理學療法士)가 되기 위해서는 厚生省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후생성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가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995년 현재 文部省 장관이 지정한 학교(26개) 혹은 후생성 장관이 지정한 양성시설(54개)에서 3년 이상 물리치료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한 자(정원 총 2,640명)이다. 物理治療士의 국가시험 합격률은 90% 이상이며, 취업률도 매우 높아 양성과정 입학에 위한 경쟁률도 높다. 자격시험은 매년 3월에 실시되는데, 필기시험(해부학, 생리학, 운동학, 병리학, 임상심리학, 임상의학 등)과 점자수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술시험 및 실기시험이 있다.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日本理學療法士協會뿐만 아니라 후생성과 再活醫學會에서도 연 1회 정도의 강습회가 개최되고 있다.

物理治療士의 80% 이상이 일반병원, 진료소, 재활병원 등의 의료현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장애인시설이나 양로원 등에 근무하는 경우는 전체의 10% 정도이다. 취업자의 70%는 남성이며, 법 제정(1965년) 이전부터 종사하는 사람을 제외하고서 物理治療士 양성과정을 이수한 치료사는 95%에 이른다. 물리치료사의 처우수준은 1995년을 기준으로 단기대학 3년 졸업자의 경우 초임은 기본급 16만엔 정도이며, 민간병원은 이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日本の 경우 高齢者 등의 증가로 물리치료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후생성에서는 고령자 保健福祉 대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물리치료사를 큰 폭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치료사도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보건소,

복지센터 등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장애의 만성화, 노령화 추세에 따라 물리치료의 대상도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에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장애정도를 경감시키는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라. 作業治療士

作業治療士(作業療法士)가 되기 위해서는 厚生省에서 실시하는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후생성 장관이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국가시험의 수험자격은 대학입학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1995년 현재 文部省 장관이 지정한 학교(21개) 혹은 후생성 장관이 지정한 양성시설(38개)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며, 作業治療士의 수요가 높아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 양성과정(정원 총 1,690명)의 교육내용은 기초과목과 기초의학과목, 임상의학계, 그리고 전문과목으로서 작업요법학, 임상실습 등이 있다. 國家試驗은 양성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하고 공통과목(해부학, 생리학, 운동학, 병리학, 임상심리학, 임상의학)과 작업요법학 등의 전문과목을 통과해야 하며, 매년 1회 실시된다.

1965년 제정된 ‘理學療法士 및 作業療法士法’에 의해 국가자격의 직업으로 출발한 작업요법사는 1966년 22명에서 1996년 현재 8천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초기에는 물리치료사 중에서 주로 작업치료사 자격을 취득해왔으나 작업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양성과정과 작업치료사의 수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다.

作業治療士의 근무처는 주로 종합병원, 재활원·재활병원, 정신신경과병원과 장애인시설이며, 그외 복지센터나 양로원 등이다. 활동영역 별로 구분하면, 장애인시설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고, 아동시설이 약 20%, 정신장애인시설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老人保健施設에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다. 작업치료사의 근로조건은 다른 의

료기술직과 유사하다. 국공립병원 등의 초임은 1995년에 기본급 16만 엔 정도이며, 민간병원의 경우에는 이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다.

마. 手話通譯士

手話通譯士는 노동성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기타 전문적·기술적 직업군에 속해있다.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수화서클이 있으며, 수화 교육을 받은 사람의 수는 약 30여 만명, 수화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사람의 수도 2만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정섭, 1990). 手話通譯士의 업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생활상담, 수화통역사의 양성을 위한 조정업무 등 다양하다. 등록된 수화통역사는 대개의 경우 다른 일을 하면서 파견기관에 등록하여 수화통역을 하고 있다.

수화통역사의 근무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각 자치단체의 복지사무소, 둘째는 청각장애인 단체와 같이 공적인 지원을 받는 시설, 셋째로는 청각장애인의 취로상담 등 통역 手話協力員으로 활동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이다. 이밖에 최근에는 醫療機關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전업 手話通譯士는 881명, 그 중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의 정식 직원으로서 배속되어 있는 경우는 221명이다. 그 외에는 대부분 비상근 시간급으로 안정적인 신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전국수화통역문제연구회, 1996). 聽覺障礙人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는 專門手話通譯士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

수화통역사는 사회복지훈련센터에서 양성하고 있으며, 정원은 10명이고, 교육기간은 1년이다. 이밖에 각 도도부현에서 단기간에 실시되고 있는 수화강습회나 수화서클 등을 통해서도 수화통역사가 양성되고 있다. 수화통역사 자격증은 厚生省 長官이 공인하는 자격이며, 자

격증은 사회복지법인 聽覺障礙人情報文化센터에서 교부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7:484).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거나 대학졸업의 학력을 갖춘 자로서 2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수화통역사 시험은 연 1회 실시되며, 1차 필기시험(국어, 언어구조, 청각장애인과 사회, 수화통역의 자세, 수화의 기초지식)과 2차 실기시험(청취통역, 수화의 독해와 녹음, 받아쓰기)으로 되어 있으며, 합격률은 수험자의 20~30%가 평균 7회까지 응시하는 것을 볼 때, 낮은 편이다(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1999).

수화통역은 手話通譯協會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수화통역사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수화통역의 발전, 수화통역사 양성에 관한 연구 및 실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후생성에서는 1970년대부터 수화봉사원의 양성 및 배치사업을 시행하는 등 手話通譯에 대한 公的 保障의 확충을 기하고 있어 수화통역사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바. 步行訓練士

日本의 보행훈련은 美國의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역사는 우리와 비슷하다. 步行訓練士 양성은 후생성에서 위탁을 받아 라이트 하우스 시각장애재활센터가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자 양성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립신체장애인재활센터에서도 양성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들 2개의 양성과정에서 공히 보행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步行訓練士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일본에서도 보행훈련사는 전문자격증제도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별도의 연수과정을 거쳐 전문화하고 있다.

사. 特殊教育教師(盲兒·聾啞·養護學校 教師)

特殊教育教師는 발달과정상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지닌 아동을 위해 특별한 교육을 통해 재활을 지원하는 직종으로서, 맹아, 농아, 양호학교 외에 일반학교의 特殊學級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특수학교는 視覺障礙兒를 대상으로 한 맹아학교와 聽覺障礙兒를 위한 농아학교, 그리고 정신지체아, 지체부자유아, 病弱兒를 대상으로 하는 養護學校로 구분되어 있다.

特殊學校는 1997년 현재 국공립과 사립을 합쳐 맹학교 71개, 농학교 107개, 양호학교 800개교 등 984개교가 있다. 각 학교의 재학생수는 맹학교 4,323명, 농학교 6,841명, 양호학교 75,280명이며, 교사수는 맹학교 3,500명, 농학교 4,861명, 양호학교 46,764명이다(노동부, 1998). 맹아·농아·양호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초·중·고등학교 教師資格을 취득한 후 더불어 맹아학교, 농아학교 또는 양호학교의 교사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特殊教育教師의 자격은 일반 교사자격과 마찬가지로 전수, 1종, 2종으로 구분되어 있다. 1995년 현재 특수교원 양성과정은 국립대학과 4년제 교원양성과정(51과정), 1년제의 임시교사양성과정(9과정), 1년제의 특별전공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원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과목을 47학점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공립의 특수학교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립학교 교사채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特殊教育教師는 1980년을 기점으로 아동수의 감소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특수교육교사 면허취득자 중에서 학교에 취직하는 자의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하여 교사의 신규채용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교사의 처우는 일반학교 교사와 비슷한 수준이며, 다만 전문지식을 요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일부 수당이 가산되고 있다.

아. 職業訓練指導教師

職業訓練指導教師 면허교부 건수는 1994년 현재 94만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총 354개)의 훈련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약 6,10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障礙人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시설은 총 19개소로서 이들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가가 설치하여 자치단체에 위탁한 시설이 11개소, 日本障礙人雇傭促進協會에 위탁한 시설이 2개소 그리고 勞動部 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 6개소 등이다. 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대학교의 양성과정을 수료했거나,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職業訓練指導教師 면허시험에 합격해야만 한다. 직업훈련지도교사 면허의 종류는 총 120여 종(1994년)으로서 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종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 지도교사의 임금은 公共職業訓練施設의 경우 공무원 급여에 준하여 지급되며, 認定職業訓練施設의 경우에는 시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表 III-2〉 日本의 再活專門人力 概要

구 분	교육요건	자격요건	수행업무	급여수준
언어청각사	-후생성 지정양성소(3년 이상), 대학전공자, 실무경험 5년 이상인 자, 외국에서 언어청각 교육을 받은 자	-국가시험 합격자에 언어청각사 자격증 수여(1999년 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의 음성, 언어, 청각기능의 검사와 재활 치료	공무원 수준(국공립기관의 경우)
의지보조기사	-고교졸업후 의지장구사 지정학교에서 3년간 의지장구학 전공자, 양성소에서 1년 이상 경험자	-국가시험 합격자(의지장구사법, 1987, 기존 실무자 5년 이상 경과규정)에 의지장구사 자격증 부여	-장애부위의 의지보조기 제작, 착용	-
물리치료사	-문부성 지정학교 또는 후생성 지정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전공 이수자	-국가시험 합격자(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 1965)에 물리치료사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 유지, 예방 훈련지도	초임 16만엔 (1995년)
작업치료사	-문부성 지정학교 또는 후생성 지정 양성소에서 3년 이상 전공 이수자	-국가시험 합격자(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 1965)에 작업치료사 자격증 부여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을 위한 작업활동 훈련지도	초임 15-16만엔 (1995년)
수화통역사	-수화통역 양성과정(협회 또는 도도부현 강습회 등)을 이수한 자	-협회(후생성 장관 공인) 자격시험 합격자에 수화통역사 자격증 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과 생활지도, 수화통역사 양성	
특수교육교사	-일반교사 자격자 외에 특수교육 전문과목(47학점까지)을 이수한 자	-국가시험 합격자에 특수교사 자격증 부여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지도(맹농, 양호학교)	일반학교 교사에 준한 대우
직업훈련지도교사	-직업능력개발대학의 전문과정을 수료하거나 각 분야별 면허직종에 특정기능을 가진 자	-국가시험 합격자에 직업훈련지도교사 자격증 부여	-장애인에 적합한 기능을 습득시키도록 교육	공공훈련시설의 경우 공무원 수준

3. 外國 制度의 示唆點

美國과 日本의 장애인 再活專門人力을 양성체계 및 자격제도를 중심으로 비교해 볼 때, 美國은 재활분야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재활전문인력의 학력과 기능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수준이 높고 자격체계 또한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특히 美國에서는 자격제도가 재활영역별로 세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視覺이나 聽覺障礙와 같이 장애유형별로도 직종분류가 체계화되어 있어 분류가 용이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자격검정이나 교육제도의 특성상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제도가 연방정부보다는 관련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문인력별로 공신력 있는 協會가 있기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이들 협회에서는 엄정한 자격검정과 관리는 물론 전문적인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어 있다.

반면 日本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日本의 재활 관련 전문직종은 義肢裝具士, 特殊教師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民間資格을 國家資格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특히 시각이나 청각언어장애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도 1980년대 후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재활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 再活專門人力 양성과 관련하여 기본 방향은 美國과 같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또한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

여 인력의 專門性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기존 종사자의 자격과 처우문제 등 현재의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資格制度와 관련해서는 자격제도의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전문적인 養成過程이 없는 분야에는 양성과정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民間資格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종의 경우에는 엄정한 자격검정 및 자격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전문성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력양성의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資格制度만을 도입한다면 專門性도 보장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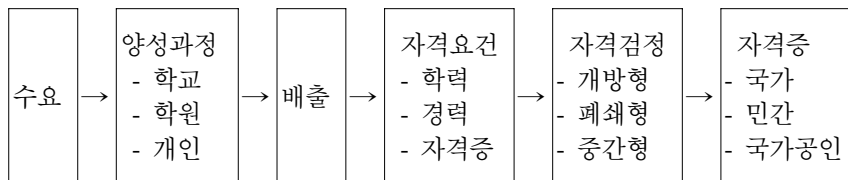
IV. 資格制度 類型과 再活專門人力

1. 資格制度의 類型

가. 資格制度의 概要

자격제도는 國家(技術)資格과 民間資格, 國家公認資格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공인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나 추진할 계획에 있다. 자격부여 체계는 해당 人力의 需要를 바탕으로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되면 학력, 경력 등을 기초로 검정 시험을 거친다. 검정을 통해 國家資格이나 民間資格이 부여된다. 이 과정을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圖 IV-1] 資格制度의 過程



資格을 검정하는 방법으로서 시험은 開放型과, 閉鎖型, 및 中間型으로 구분된다. 개방형은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과 관련 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으로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스, 열관리사 등이 해당된다. 폐쇄형은 특정학과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자격증을 부여하는 체계로서 의사, 약사, 교사 등이 해당된다. 한편 사회복지사와 같이 특정학과 이수자와 기타 소정의 연수기간을 이수한

수료자가 시험을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중간형이 있다.

자격의 法的 規定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에서는 근거조항, 즉 자격의 종류, 기준, 등급, 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명칭, 응시자격, 검정기준, 시험방법, 배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시험과목, 기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나. 資格의 種類

자격의 종류는 國家資格과 民間資格, 민간자격의 國家公認으로 구분되는 바, 국가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취급하거나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직종에 해당된다. 시험기관은 국가기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기관이 시행한다. 한편 民間資格은 국가자격 이외의 모든 자격이 해당되며 시험기관은 학회, 단체, 개인, 법인이 될 수 있다. 민간자격의 國家公認制度는 자격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의 직종이 해당되며, 국가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1) 國家資格

國家資格은 개별법령이나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해 부여되는 자격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勞動部가 검정소관부처로 되어 있으며, 노동부는 韓國産業人力公團과 大韓商工會議所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1998년 10월 현재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자격은 총 737종목이다.

保健福祉 분야의 국가자격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양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약사법의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위

생법에 의한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의료법에 의한 응급구조사, 의료기사법에 의한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안경사와 의료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전문의, 간호조무사, 안마사, 그리고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이다.

2) 公認民間資格

公認民間資格制度는 민간이 검정을 주관하여 발급하는 자격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그 자격의 검정, 발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기준을 만족한 자격에 대하여 국가기술자격과 똑같은 公信用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기술자격을 포함한 국가자격을 관장하는 데에 따른 비용, 노력, 비효율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으로 英國, 濠洲, 獨逸 등을 비롯한 先進國에서 용어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가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3) 民間資格

이 資格制度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순전히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자격을 개설하여 검정을 시행하고 자격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재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민간자격은 언어치료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보장구기사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보장구기사는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경력으로 협회차원의 자격을 발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민간자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자격은 민간자격의 질을 고양하고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公認民間資格이나 國家資格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인의 과정과 國家資格化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검정시설과 내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인을 획득하고 국가자격으로 인정된 후에도 주기적으로 그 자격의 질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자격의 質的 高揚을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자격은 민간자격과 비교해 볼 때 첫째, 자격취득을 원하는 국민에게는 자격취득과정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고 둘째, 취득후의 직업선택에 있어서 公認民間資格 또는 國家資格이 민간자격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 IV-1〉 資格制度의 類型區分

구분	자격내용	법적 근거	시행 주체	시험기관	부여기관	비 고
국가 자격	-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국가에서 자격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개별법	국가	국가기관 민간위탁	국가	의사, 약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민간 자격	- 국가자격 이외의 모든 자격	근거없음	민간	학회, 단체(협회), 개인, 법인	학회, 단체(협회), 개인, 법인	수화통역사, 언어치료사
국가 공인	- 자격의 공신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근거없음	민간	민간	민간(공인 표시)	국가자격과 동등

4) 資格制度의 變化

國家資格의 변화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국가의 기간산업 유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익과 관련이 깊은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검정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이미 1997년 3월 ‘資格基本法’을 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勞動部와 教育部는 산업현장의

직업과 자격을 긴밀하게 연계시켜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공인 民間資格制度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공인민간자격제도에서는 자격의 운영 주체는 민간단체이지만 그 민간단체가 부여하는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줌으로써 국가자격과 동등한 공신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외의 경제 여건 변화와 빠른 기술의 변화에 자격제도가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國家競爭力 제고에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그간 정부의 주도아래 운영되어 온 國家技術資格의 많은 종목이 검정내용과 수준에서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과 또한 이것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2. 國家資格制度의 現況

가. 國家資格의 現況

우리나라의 國家資格은 크게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자격과 각 주무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으로 구분된다. 技術資格은 단일 법령에 의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온 반면, 개별 법령상의 자격은 여러 소관부처와 법령에 의해 도입되어 운영됨으로써 자격 체계와 관리 방식이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國家技術資格과 개별 법령상의 國家資格을 하나의 통일된 틀로 정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國家資格制度에 대한 종합적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체계를 갖는 이들 자격을 몇 가지의 준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해 직무분야별, 직종별, 종목별로 분류한 우리나라 國家資格의 현황은 다음의 <表 IV-2>와 같다.

<表 IV-2> 分類基準에 따른 國家資格의 現況

구 분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자격	개별 법령상 국가자격
직무분야	26개 분야	15개 분야
직 종	-	119개 직종
종 목	595개 종목	-

직무분야는 ‘國家技術資格法’에서 기술자격의 영역을 분류하기 위해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섬유,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농림, 해양, 산업디자인,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교통, 공예, 사무관리, 음·식료품, 위생 등 모두 26개 분야로 분류된다. 그러나 기술분야 이외의 國家資格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서는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國家資格制度 전반의 운영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상의 자격에도 직무분야라는 분류 개념을 적용하여 자격의 영역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술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총 15개의 직무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의료·보건, 전문사무, 교육·사회복지, 서비스(국가기술자격법상에 규정된 이외의 분야) 등 4개의 직무분야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직무분야에 속하지 않으며, 나머지 산업응용, 건축, 해양, 농림, 공예, 항공, 에너지, 통신, 안전관리, 교통, 국토개발 등 11개의 직

무분야는 國家技術資格法 상의 직무분야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가자격은 총 30개의 직무분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國家技術資格法에서는 직무분야의 하위 개념으로 종목이라는 개념을 활용하고 있다. 하나의 직무분야는 여러 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종목의 수는 595개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에서는 이 개념을 활용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법과 그렇지 않은 법이 혼재되어 있어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종목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직무분야별 및 등급별로 자격을 분류하는 최소의 단위로 종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개별 법령상의 자격들에는 자격 내에 등급체계를 갖지 않는 자격도 존재하고, 등급은 없으나 하나의 자격 내에 다양한 업무 영역을 구분하여 발급하는 자격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격별로 등급과 업무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종목 개념으로 분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분야 이외의 國家資格에서 직무분야 하의 세부 분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유사한 개념을 활용하여 분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종목과 유사한 개념으로 직종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이 개념에 따라 분류해 보면, 기술 분야 이외의 국가자격은 15개의 직무분야 하에 119종의 직종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분류결과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국가자격의 직무 분야는 총 30개이며, 기술 분야 자격의 종목은 595개, 기타 분야의 직종은 119개라고 할 수 있다.

나. 主務部處別 種目 및 職種

우리나라에서는 24개의 部, 處, 廳에서 국가자격을 관장하고 있다. 주무부처별로 관장하고 있는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의 <表 IV-3>과 같다.

<表 IV-3> 主務部處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건설교통부	개별자격	15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기술자격	106	토목시공, 토목, 건축시공,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 도시계획, 조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등
	소계	121	
경찰청	개별자격	4	경비지도사, 기능검정원, 강사, 운전면허
	기술자격	6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소계	10	
과학기술부	개별자격	7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등
	기술자격	58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등
	소계	65	
관세청	개별자격	2	관세사, 보세사
교육부	개별자격	7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국세청	개별자격	1	주조사
금융감독위원회	개별자격	3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노동부	개별자격	4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훈련교사
	기술자격	188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등
	소계	192	
농림부	개별자격	8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업사, 수의사, 어업사, 임업사, 전통식품명인, 환지사
	기술자격	6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소계	14	
농촌진흥청	기술자격	22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채소재배 등
문화관광부	개별자격	10	경기지도자, 국내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등
	기술자격	2	영사
	소계	12	

〈表 IV-3〉 계속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법무부	개별자격	1	변호사
법원행정처	개별자격	1	법무사
보건복지부	개별자격	27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기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기술자격	20	식품, 이용, 미용,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식품가공, 농산식품가공, 수산식품가공, 세탁
	소계	47	
산림청	개별자격	2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기술자격	17	임산가공,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등
	소계	19	
산업자원부	개별자격	2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기술자격	79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등
	소계	81	
재정경제부	개별자격	2	공인회계사, 세무사
정보통신부	개별자격	3	아마추어무선기사, 특수무선통신사, 무선기사
	기술자격	30	전파통신,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등
	소계	33	
중소기업청	개별자격	3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품질경영진단사
철도청	기술자격	19	철도차량, 전기철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등
특허청	개별자격	1	변리사
해양수산부	개별자격	14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등
	기술자격	20	수산양식, 수산제조, 해양생산관리, 어병 등
	소계	34	
행정자치부	개별자격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사
	기술자격	11	위험물관리, 지적, 지적기능, 소방설비
	소계	13	
환경부	기술자격	11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계		714	

다. 職務分野別 種目 및 職種

714종의 國家資格을 職務分野別로 살펴 보면 다음의 <表 IV-4>와 같다. 이에 따르면, 기술자적인 기계 분야가 121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금속 분야 48개, 농림 44개, 산업응용 41개의 순이다. 한편, 산업디자인과 위생 분야는 각각 6종과 5종으로 그 숫자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인 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 종목은 부록 참조).

<表 IV-4> 職務分野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구 분	종목 및 직종	구 분	종목 및 직종
1. 기 계	121	16. 교육·사회복지	12
2. 금 속	48	17. 안전관리	22
3. 의료·보건	27	18. 광업자원	16
4. 산업응용	41	19. 화공 및 세라믹	20
5. 건 축	34	20. 전기	17
6. 해 양	35	21. 조선	9
7. 서 비 스	5	22. 환경	13
8. 농 림	44	23. 교통	7
9. 전문사무	23	24. 국토개발	12
10. 토 목	29	25. 전자	13
11. 섬 유	30	26. 정보처리	8
12. 공 예	24	27. 산업디자인	6
13. 항 공	18	28. 사무관리	32
14. 에 너 지	13	29. 음식료품	10
15. 통 신	20	30. 위생	3

라. 應試資格 中 學歷 要件

國家資格의 응시자격 중 학력 요건을 살펴보면 <表 IV-5>와 같다. 이에 따르면,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국가자격이 676종(94.7%)이고, 고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21종(2.9%), 그리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자격이 17종(2.4%)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國家資格이 응시자격으로 學歷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가기술자격 595종목은 모두 학력제한 없이 현장실무 경력만으로도 응시가 가능하다.

<表 IV-5> 國家資格의 應試資格 中 學歷要件 有無

구 분	종목 및 직종(%)	국 가 자 격
① 제한 없음	676(94.7)	생 략(국가기술자격 595종목 포함)
② 고졸 이상	21(2.9)	간호조무사, 경기지도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교사, 안경사, 안마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준교사, 청소년지도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한약업사
③ 전문대졸 이상	17(2.4)	사서,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수의사, 약사, 양호교사, 영양사, 의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의, 정교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치과의사, 한약사, 해무사
계	714(100.0)	

마. 資格試驗 有無

國家資格을 취득하기 위해서 자격시험을 치루어야 하는 직종은 <表 4-6>에서와 같이 697종(97.6%)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국가자격은 자격시험을 자격취득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에 資格試驗 없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은 17종(2.4%)으로, 이는 크게 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사서,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과 법정 자격요건 해당자로서 서류심사 등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농업사, 산림토목기술자, 안마사, 임업사, 어업사, 전통식품명인) 및 기타 방법(구명정수,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과정

의 이수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도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자동적으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과 정규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취득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表 IV-6〉 國家資格의 試驗制度 有無 現況

구 분	종목 및 직종(%)	국 가 자 격
① 시험 있음	697(97.6)	생 략(국가기술자격 595종목 포함)
② 시험 없음	17(2.4)	구명정수, 농업사, 사서,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산림토목기술자, 안마사, 양호교사, 어업사, 영림기술자,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임업사, 전문상담교사, 전통식품명인, 정교사, 직업훈련교사
계	714(100.0)	

〈表 IV-7〉 國家資格의 等級 有無

구 분	종목 수(%)	국 가 자 격
① 등급 있음	624(87.4)	경기지도자, 관광숙박업지배인, 기관사, 도선사, 사서, 사회교육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산림토목기술자, 생활체육지도자, 아마추어무선기사, 양호교사, 영림기술자, 운전면허, 운항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정교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주조사, 직업훈련교사, 청소년지도사, 통신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항해사, 국가기술자격 595종목은 생략
② 등급 없음	90(12.6)	생 략
계	714(100.0)	

바. 資格等級의 有無와 種類

國家資格 중에서 等級區分을 하는 자격은 모두 390직종(81.2%)이고, 등급 구분을 하지 않는 자격은 90직종(18.8%)이다(表 IV-7 참조). 등급

구분이 있는 자격 중에는 국가기술자격 361직종이 포함되어 있다.

等級이 있는 國家資格의 등급 명칭은 자격 종목별로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자격이 ‘급’으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고, ‘종’, ‘갑·을·병’으로 등급을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관광숙박업지배인의 경우 총지배인, 1급 지배인, 2급 지배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사서의 경우는 준사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증심사원은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검증심사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表 IV-8〉 國家資格 等級의 種類

구 분	국 가 자 격
① 급	경기지도자(1·2급), 기관사(1~6급), 사회교육전문요원(1·2급), 사회복지사(1~3급), 산림토목기술자(1·2급), 생활체육지도자(1~3급), 아마추어무선기사(1~3급), 양호교사(1·2급), 영림기술자(1·2급), 운항사(1~4급), 위생사(1·2급), 위생시험사(1·2급), 응급구조사(1·2급), 정교사(1·2급), 정신보건간호사(1·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1·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주조사(1·2급), 직업훈련교사(1~3급), 청소년지도사(1·2급), 통신사(1~3급), 향해사(1~6급),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 국가기술자격 6종목(부기,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1~3급)
② 종	도선사(1·2종), 운전면허(1·2종)
③ 갑·을·병	특수급무선통신사 중 무선전화(갑·을·병)
④ 기타	기술·기능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서비스 국가기술자격 353직종(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관광숙박업지배인(총지배인, 1·2급지배인), 사서(준사서, 정사서1·2급), ISO9000 인증심사원(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심사원보·심사원·선임심사원·검증심사원), 서비스분야 중 사업서비스 국가기술자격 1종목(주산: 1~11단 및 1~3급)

國家技術資格의 경우에는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중 기타 서비스는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의 등급체계를 갖고,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는 1~11단 및 1~3급의 등급체계를 갖는 주산 이외의 직종은 모두 1~3급으로 구분된다(表 IV-7 참조).

3. 再活專門人力의 國家資格制度 導入을 위한 檢討

國家資格制度의 현황과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자격제도의 변화추세를 살펴볼 때, 再活專門人力의 국가자격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재활전문인력 분야에서 장애인의 수요가 크고 또한 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가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補裝具技士(의지·보조기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資格의 種類에 대한 檢討

현재 政府의 자격에 대한 政策方向을 고려해 볼 때, 보장구기사와 같은 재활분야의 직종을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補裝具技士와 같이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으로 신설한다고 하였을 때 그 타당성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자격으로 하였을 때 資格의 公信力 확보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 補裝具 분야의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그 분야도 점차 전문화될 것을 고려한다면 국가기술자격으로 정하는 것은 資格制度 운영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하여 이 자격을 공급자 위주의 자격으로 전락시켜 자격의 현장 활용성을 저감시킬 우려가 있다.

다른 문제는 국가기술자격으로 再活人力의 자격을 신설할 경우 이 자격이 속할 적절한 분야가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23개 분야가 설정되어 있으나, 醫療·保健·福祉와 관련된 분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재활분야 인력을 위해서 國家技術資格에 새로운 분야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 또한 補裝具 분야의 경우만 해도 자격종목이

의지, 보조기, 휠체어, 보청기, 흰지팡이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편될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면 각 종목 당 5개 등급의 자격이 신설될 것이므로 약 25종목 이상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에 포함시킬 경우 韓國産業人力公團이 검정을 위탁받아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재 재할인력을 관장할만한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새로이 고용하지 않으면 檢定の 질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다.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에 의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현행의 기구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활분야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신설은 검정시행 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補裝具技士 자격을 國家資格으로 신설하려고 하였을 때는 국가기술자격보다는 해당 부처가 검정과 합격자 등을 관리하는 國家資格으로 신설하는 것이 재활분야의 자격취득자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첫째로 보건복지부가 자격검정관련 사항, 합격자 관리, 보수교육 등을 보건복지부의 개별 법률로 정하면 補裝具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단체, 예를 들면 國立再活院 등에 검정관련 사항을 위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단체와 인력에 의해서 검정이 시행되게 함으로써 이 자격의 現場活用性을 증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保健福祉部의 개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자격관련내용의 개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의 경우에 자격의 종목과 검정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勞働部가 주관하는 『國家技術資格制度審議委員會』와 검정을 주관하는 韓國産業人力公團의 의견 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리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게 되

므로 산업현장의 경제적, 기술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셋째, 국가기술자격에 補裝具技士 자격이 속하게 되면 민간자격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로 분류한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의 범주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보장구기사 자격이 활성화되어 민간쪽에서 이 자격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公認民間資格으로 자격을 전환하려고 할 때 공인민간자격으로써 진출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한가지가 國家資格으로 보건복지부의 법률로 신설하는 것이다.

나. 國家公認資格으로의 方案

長期的으로 볼 때 재활전문인력도 公認民間資格으로 운영하는 것이 자격의 현장활용성의 증대를 위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러한 자격제도로 운영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현재 教育部와 勞動部는 ‘資格基本法’에 의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는 공인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려고 정부의 부처들과 협의 중에 있다. 그러나 각 부처의 입장이 첨예하게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도가 연내에 실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에 부합되는 자격제도 도입방안을 현재의 시점에서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公認民間資格制度로 보장구 분야의 자격을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

둘째, 資格基本法 시행령 5조에 의하면 민간자격 공인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검정이 시행된 것으로써 3회 이상의 자격검정이 있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韓國補裝具協會’가 보장구에 관련된 민간자격을 위에서

언급한 기간과 횟수만큼을 발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보장구협회가 補裝具技士 자격에 관한 검정이나 자격증을 발급한 실적이 없고 더욱이 검정을 위한 조직이나 운영 면에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민간이 주축이 되어 공인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할 때 당장에 공인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補裝具技士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출범하였다가 어느 정도 민간쪽에서 이 자격의 검정을 시행하고 관리할 능력이 생겼을 때 國立再活院 등과 협의하여 韓國補裝具協會가 민간차원에서 이 자격의 검정전문단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 民間資格

현재 民間資格으로 학회나 협회차원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언어치료사, 수화통역사, 직업생활상담원과 같은 자격은 자격의 공신력 확보와 질적 고양을 위해서 추후 國家의 公認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직업평가사, 보행훈련사, 재활체육지도자와 같은 재활전문인력들에게는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재활전문인력에 대하여 民間資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물론 이들 자격을 발급하는 단체가 어느 정도 資格檢定에 대한 경험을 쌓고 이들이 발급하는 자격이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公認民間資格制度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補裝具技士의 資格導入 方案

도입형태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재활인력 중 補裝具(의지·보조기) 자격의 경우는 국가기술자격이외의 국가자격으로 保健福祉部의 법령아래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개별법에 규정하기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 이미 障礙人福祉法 제 50조에 보장구 제조·수리업의 허가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補裝具技士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속에 자격검정, 합격자 관리, 보수교육 그리고 의무고용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資格等級 및 名稱

補裝具技士 자격의 분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의지·보조기 기구 및 기기 제작을 위주로 하는 분야와 의지·보조기 기구 및 기기의 설계를 위주로 하는 분야로 나눌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기능위주의 제작지식과 기술이 중요한 자격이고, 後者는 보장구 제작을 위한 전 단계인 설계능력 위주의 자격이다. 이것은 의사의 처방과 검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醫療行爲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위주의 자격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기능계 자격과 기술계 자격으로 구분하여 補裝具技士 자격을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계와 기능계가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國家技術資格도 기술과 기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금 기술계와 기능계를 통합한 자격체제를 1999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감안할 때 단일 등급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기능위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반면에 기

술위주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單一等級體制를 따른다는 전제하에 자격의 등급 설정시 기능을 위주로 한 분야에 2단계를 두고, 설계를 위주로 한 분야를 기능분야보다 한 단계 상위의 자격을 설정함으로써 처음에는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資格檢定の 횟수를 거듭하면서 산업현장에서 고급자격에 대한 요구가 있게 되면 4단계 또는 5단계까지 자격의 등급을 세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國家資格에서 각 자격 등급의 구분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급’이므로 1, 2, 3급과 같은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격의 명칭은 補裝具 또는 義肢·補助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補裝具(의지·보조기) 1급, 2급, 3급 자격으로 칭할 것으로 제안한다. 또 하나의 제안은 기능을 위주로 한 자격과 설계를 위주로 한 자격이 현실적으로 명칭상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능쪽의 자격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장구’ 1급, 2급이라고 칭하고, 설계쪽의 자격은 ‘보장구사’라고 칭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應試資格

기존의 國家資格制度는 학력과 경력 조건을 고려하여 응시자격 요건을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요건을 고려할 때 보장구 분야는 전문대 수준의 재활공학과와 존재로 학력에 따라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資格制度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주는 제도로 여기에서는 특정등급의 資格試驗에 응시할 때 학력적인 요소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경력에 대한 요건도 學歷의 요건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학력과 경력이 낮더라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은 資格制度의 특정등급이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에 걸맞는 능력을 갖춘 것이 되고 자격제도는 이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補裝具 분야의 자격은 응시자격에 학력과 경력요건을 고려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試驗方法

1차 시험으로 필기시험을 치루도록 한다. 출제내용은 産業現場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출제형식은 주관식 출제문항을 위주로 하면서 5지 선다형 문제를 혼합한 형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출제방식은 단순암기위주의 학습내용과 방법을 지양하고 지식과 기술의 맥락을 중시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맥락적 이해가 없는 지식과 기술은 기술인력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다.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와 빠른 기술의 변화는 技術人力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직무수행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生産現場의 내용중심으로 구성된 주관식 문항 위주의 필기시험방법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문항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따라 배점을 달리할 수도 있고, 과목별 점수 배당도 달리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시험은 綜合的인 實技能力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전체적으로 측정내용은 재료의 준비를 포함하여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때 제작과정을 점수화시켜 제작과정과 관련된 모든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최종 제품의 완성도를 점수에 반영한다.

단편적인 실기능력은 산업현장에서 전혀 쓸모없는 능력이다. 현재 國家技術資格은 검정료, 검정장비, 학교와 훈련기관의 교육과정, 합격률 등을 고려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종합적인 실기능력 평가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실기검정방법을 여러 종목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의 실기검정은 자격의 현장활용성 면에서 여러 가지 결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것을 고려할 때 補裝具 자격에서는 등급에 따라 난이도가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 이것을 작품으로 제작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실기검정을 시행한다면 응시자의 종합적인 실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實技試驗을 통해서 능력을 검증 받은 근로자는 産業現場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4) 合格者 決定方法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은 과목별 합격여부를 고려하여 전과목에 걸쳐 과목당 70점(또는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로 한다. 이때 과목별로 합격 여부를 발표하도록 한다. 따라서 응시자는 과목별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1차 시험과목에 합격하였을 때, 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2차 시험의 합격자는 총점 60점 이상을 획득한 응시자로 한다. 이 때 실기능력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실기 시험 점수 배점 중 완성된 작품 평가점수가 전체 점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5) 試驗免除

가) 教育課程 履修에 따른 試驗免除

특정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試驗免除 조항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教育課程의 이수와 자격의 취득이 연계되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나 교육과정을 통하지 않고 자격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특정 교육과정 이수자에게만 시험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진입장벽을 두는 것이 되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응시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의견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教育課程 이수에 따른 시험과목의 면제는 능력중심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자격제도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은 기초지식과 기능을 위주로 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資格試驗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직무수행시 요구하는 능력을 위주로 검정을 실시하므로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의 내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과정 이수자에게 자격시험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실기위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육과정 이수자의 대부분은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이수자가 그렇지 못한 시험 응시자에 비하여 자격취득에 있어서 큰 이익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試驗의 免除는 오히려 자격이 갖고 있는 가치를 하락시켜 자격취득자들에게 취득한 자격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취득한 자격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資格의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노력을 정당하게 기울였을 때 가능하며,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자격의 需要者인 장애인이나 기업가들도 자격에 대해서 정당

한 평가와 대우를 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격을 무력화시켜 資格制度의 존재 근거를 의심받도록 한다.

나) 1次 試驗免除

1차 시험 합격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하여 실패하였을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정된 國家技術資格法에는 1차 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2년간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것은 2년을 주기로 시험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이다. 補裝具 자격의 검정을 시행할 경우 이 자격의 검정내용 변경주기가 정해지면 그 기간동안 필기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6) 經過措置(既存 從事者들의 資格賦與)

1997년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이 보장구분야 제조인력을 파악한 통계를 보면 1997년 현재 전체인력의 규모는 460~6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서 대졸 이상이 19.6%, 고졸이 70.2%, 중졸 이하가 10.2%로 구성되어 있다. 韓國補裝具協會가 증명한 경력상황을 살펴보면 7년 이상이 63.0%, 3~7년이 22.4%, 3년 미만이 14.6%으로 나타났다. 보장구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실태를 살펴볼 때 유일하게 전문학에 재할공학과가 정원 80명 규모로 1996년도에 설치되어 있으며 1998년 10월 현재 졸업생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産業現場의 인력이 보장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현장에 종사한 인력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능력차이를 정할 때 학력 요건을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現場經歷에 의하여 기존의 기술인력에 차별을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 분야는 주로 徒弟方式으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현장경력기간이 기술인력의 능력차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資格制度가 새롭게 도입될 때 이들 기존 技術人力들이 새롭게 설치되는 자격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일정한 경과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롭게 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義肢·補助器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기술인력들은 자격의 취득을 강요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이들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는 배려차원에서 기존의 당해 분야에 종사하던 인력에게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限時的인 措置가 필요하다. 이것을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를 설정할 수 있다.

첫째, 資格試驗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들이 자격취득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통하여 자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연수과정의 개설시 설치하고자 하는 자격의 수준에 따라 학습 내용과 수준이 다른 과정을 설치하고 여기에 등록할 있는 자격조건을 위에서 이미 언급한 현장경력을 기준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방법이다. 둘째, 現場經歷과 현재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먼저 자격을 부여한 다음 일정기간동안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셋째, 義肢·補助器 분야에서는 이제까지 주로 도제제도에 의해서 지식과 기술이 전수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자격취득 시험 준비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기술인력들에 대해서는 筆記試驗을 면제하고 實技試驗만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위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자격 취득자의 해당분야 능력의 보유를 보장하고 이들이 산업현장에 진출하여 실무를 담당하였을 때 資格의 현장 活用性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첫 번째 방법의 적용

시 검정을 엄격하게 시행하여 연수 교육과정의 이수자 자격시험 합격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研修 教育課程 마련시 응시하고자 하는 자격의 수준에 따라서 개설된 과정의 학습 내용, 수준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다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研修期間은 자격취득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수준과 자격취득 희망자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V. 再活專門人力 養成을 위한 政策方案

1. 基本方向

再活專門人力의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은 기본적으로 자격의 필요성 및 전문인력에 대한 需要·供給 추계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부여하며, 養成過程과 資格檢定要件 등의 기준을 갖춘 民間資格에 대해서는 公認民間資格化 하여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처우하도록 하여야 한다. 先進 外國의 경우에도 기술발전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모든 직종을 國家資格化하지 않으며 국가공인으로 공신력을 인정해주는 추세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활의학전문의, 특수교육교사 등 양성과정과 국가자격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직종 가운데에서도 수요와 공급실태를 감안한 장단기 육성계획을 수립한 후 인력공급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專門人力 養成體系의 確立

가. 障礙人 需要에 따른 適正 人力需給 計劃의 樹立

再活專門人力 중 정규 교육기관에 의한 양성과정과 國家資格制度를 갖추고 있는 직종은 장애인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再活醫學專門醫의 경우 면허취득자가 현재 376명으로서 장애인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나 양성과정이 점진

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002년부터 전공의를 90명으로 일정하게 고정,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는 物理治療士의 경우에는,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再活院이나 복지시설 근무자는 오히려 매우 적은 실정이므로 이들이 재활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배치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作業治療士의 경우 재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작업치료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이 한 곳에 불과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양성기관을 점진적으로 확충함과 동시에 과잉공급 상태인 物理治療學科의 作業治療學科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特殊教育教師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아동에 비해 교사인력이 약 1천명 이상 부족한 실정(2001년 기준)이므로 통합교육이 어려운 重症障礙兒의 교육재활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사의 양성과 배치의 확대가 필요하다.

나. 再活專門人力の 段階的 國家資格 導入

補裝具技士의 경우 현재 양성과정과 자격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準醫療的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수요가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國家資格化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한 곳밖에 없는 정규 교육기관의 양성과정을 확대 설치하고, 日本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종사자들을 위한 경과조치로서의 별도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자격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관련 學會나 協會에서 자체적으로 민간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再活專門人力에 대해서는 양성과정, 자격검정절차, 검정기관의 공신력, 보수교육 등을 중심으로 현재 운용중인 자격제도 전반에 걸쳐 엄격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한 후 일정기준 이상을 요건을 갖춘 자격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민간자격을 국가가 공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1단계로서 言語治療士, 聽覺臨床家, 手話通譯士, 點譯士에 대해 민간자격을 공인민간자격화하고 배치규정을 마련한 후, 2단계로서 직업재활상담사, 재활체육지도자,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등의 자격을 國家가 公認하는 자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表 V-1〉 現行 再活專門人力의 資格制度 概要

구 분	직 종
국가자격	재활의학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특수교육교사, 직업훈련교사
민간자격	보장구기사, 언어치료사, 청각임상가, 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상담사, 수화통역사, 점역사, 치료레크리에이션 지도자
자격제도 없음	직업평가사, 보행훈련사, 재활체육지도자 등

각 직종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言語治療士의 경우 현재 6개 기관에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고, 최근 그 동안 양분되어 있던 學會가 통합에 합의하고 美國을 모델로 하여 공통의 자격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자격관리전반에 대한 엄정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公認民間資格 부여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聽覺臨床家の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양성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개교에 불과하고, 최근에서야 자격제도가 갖추어졌지만 청각장애인의 수요가 크다는 점과 아울러 언어치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인민간자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手話通譯士의 경우 현행 민간자격의 도입 역사가 일천하지만 수화 통역사가 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수화통역에 대한 수요가 점증하고 있으며 1997년에 수립된 장애인복지 발전 5개년 계획에서도 명시되었듯이 그 重要性을 감안한다면 전반적인 자격관리체계 및 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공인민간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點譯士의 경우 1998년에 들어서서 처음으로 양성과정과 자격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격제도가 내실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수화통역사와 마찬가지로 ‘障礙人福祉發展 5個年 計劃’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활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선적으로 점역사 양성과정을 확대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자격전반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공인민간자격화 할 필요가 있다.

職業再活相談士의 경우 현재 韓國職業再活學會에서 민간자격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명칭과 기능이 모호한 실정이다. 그러나 장애인 재활의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직업재활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우선 그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성과정과 자격제도를 정비한 후 장기적으로 公認民間資格化할 필요가 있다.

再活體育指導者의 경우 장애인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높고, 체육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체육을 지도해 줄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점, 社會參與의 효과가 큰 분야라는 점, 그리고 현재 장애인체육전담기구인 韓國障礙人福祉體育會가 장애인체육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우선적으로는 양성과정과 현재 수료증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격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용하고 추후에 공인민간자격 부여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治療레크리에이션 指導者의 경우에는 각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재활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서 현재보다는 장래에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

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인민간자격화 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다. 再活專門人力 養成過程의 優先 設置

현재는 養成過程이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직업 및 사회재활영역의 필수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職業評價士, 步行訓練士 등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관련협회, 기관 등에 양성과정을 우선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자격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職業評價士의 경우 장애인이 성공적으로 직업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의 직업능력과 적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인 직업재활계획을 수립하여 취업으로 연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職業再活 영역의 핵심적인 전문인력이나 현재까지 자격제도는 물론 양성과정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養成過程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보행훈련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한데다, 현재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서 연 1회 1주일의 일정으로 보행훈련사 양성강습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현재수준으로서는 재활전문인력으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協會 차원에서 먼저 양성과정을 설치하고 이후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후 장기적으로 공인민간자격화 해야 한다.

參 考 文 獻

- 강성관, 「재활의학의 현재와 미래」, 『대한재활의학회지』, 1985.
- 권선진 외, 『장애인 보장구산업의 육성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권영희, 「재활상담가 양성방안과 제도확립」, 『제4회 재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5.
- 권혁철, 「우리나라 의료재활 전문인력 수요·공급 및 추계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권혁철·이충휘, 『21세기 우리나라 적정 물리치료사 인력 수급계획에 관한 연구』, 1998.
- 김의숙 외, 『장단기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연구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1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역, 『미국직업전망서』, 1998(Bureau of Labou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1996~1997).
- 노동부 중앙고용정보관리소 역, 『일본직업핸드북』, 1999(日本労働研究機構, 職業ハンドブック, 1997).
- 박옥희·권중돈·하길웅, 『장애인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 박지환·정낙수·송영화, 「한국 물리치료사의 현황분석과 그 효율적 활용방안」, 『대한물리치료사협회지』, 1989.
- 박혜숙, 「일본의 언어치료사 자격제도의 추진현황」, 『언어병리학 심포지움』, 한국언어병리학회·한국언어치료학회, 1992.

- 보건복지부·교육부·노동부,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1998~2002』, 1997.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1994, 1995, 1996, 1997.
- _____, 『보건복지백서』, 1997.
- 신명훈 외, 『자격제도의 종합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1997.
- 이미자, 『한국 직업치료의 현황과 대안』, 『대한직업치료학회지』, 제6권
제1호, 1998.
- 인경석, 『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1998.
-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장애인복지종합대책』, 1989.
- 장애인재활연구소, 『재활요원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0.
- 전봉운, 『재활전문가 양성 및 재활훈련과정의 발전방향』, 『재활세미나
자료: 재활서비스 질적 향상방안』, 국립재활원, 1993.
- 전세일, 『의료재활의 중요성 및 한국에서의 문제점』,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월간고용, 1995.
- 정기원·권선진·계훈방,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1995.
- 조정윤 외, 『국가자격요람(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998.
- 조홍식, 『재활상담사 양성 및 제도확립』, 『제5회 재활심포지엄 자료
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 통계청, 『우리나라 장래인구 추계』, 1996.
- _____, 『OECD 국가의 주요통계지표』, 1997.
- 한국언어병리학회·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병리학 심포지움』, 1992.
- 한국언어병리학회, 『언어임상수련 감독자 연수프로그램』, 1997.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 직업재활관련기관 전문인력 개발에 관한 연구』, 1998.

_____, 『장애인 직업훈련 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1997.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재활정보총람』, 1998.

_____, 『재활요원양성방안에 관한 연구-보장구제작사, 직업평가사, 언어치료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7.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연수교재』, 1997.

한국아·태장애인10년연구모임,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에 대처 할 국가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자료집』, 1995.

한옥회, 『한국 청각장애인의 실태』,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 1997.

厚生省, 『厚生白書』, 1998.

American Speech-Language-Hearing Association, *ASHA*, 1997.

Association for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Standards for University Personnel Preparation Programs in Education of Students with Visual Impairments*, 1996.

Bureau of Labour Statistics, *1998~99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1998.

Fredric K. Schroeder, *Rehabilitation-related Professions*, 1997.

International Medical Foundation of Japan, *Seamic Health Statistics*, 1997.

Jacoby I., *Forecasting Requirements for Physical Therapist*, Physical Therapy, 1995.

Robertson, S. E. and Brown, R. I., *Rehabilitation Counselling*, N.Y.: Chapman & Hall, 1991.

.N., *World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Briefing Packet*, 1998.

附 錄

〈附表 1〉 主務部處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건설 교통부	개별자격	15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리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자가용조종사, 주택관리사
	기술자격	106	토목시공, 토목, 건축시공, 건축, 건축설비, 건설기계, 도시계획, 조정,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차체정비, 건설기계기관정비, 건설재료시험, 실내건축,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포장, 콘크리트,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지게차운전, 공기압축기운전, 로우더운전, 스크레이퍼운전, 아스팔트믹싱플랜트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쇄석기운전, 준설선운전, 사리채취기운전,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조적, 미장, 온수온돌, 유리시공, 타일, 건축도장, 도배, 건축목공, 거푸집, 비계, 가구제작, 철근, 목재창호,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토목품질시험, 건축품질시험, 금속재창호, 자동차검사,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항공, 항공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기관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교통
	소계	121	
경찰청	개별자격	4	경비지도사, 기능검정원, 강사, 운전면허
	기술자격	6	화약류관리, 화약류제조, 화약취급
	소계	10	
과학 기술부	개별자격	7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로조정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기술자격	58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사 종목
	소계	65	

〈附表 1〉 계속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관세청	개별자격	2	관세사, 보세사
교육부	개별자격	7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 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국세청	개별자격	1	주조사
금융감독 위원회	개별자격	3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노동부	개별자격	4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훈련 교사
	기술자격	188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 업위생관리, 다른 주무부장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 자격종목(기술사 종목 제외)
	소계	192	
농림부	개별자격	8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농업사, 수의사, 어업사, 임업 사, 전통식품명인, 환지사
	기술자격	6	축산, 식육처리, 축산식품가공
	소계	14	
농촌 진흥청	기술자격	22	농화학,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채소재배, 과수재배, 화훼재배,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농업기계, 생사, 버 섯종균
문화 관광부	개별자격	10	경기지도사, 국내여행안내원, 관광통역안내원, 관광숙박 업지배인,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사서, 생활체육지도자,接客중사원, 청소년지도사
	기술자격	2	영사
	소계	12	
법무부	개별자격	1	변호사
법원 행정처	개별자격	1	법무사

〈附表 1〉 계속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보건 복지부	개별자격	27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사회복지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기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기술자격	20	식품, 이용, 미용,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식품가공, 농산 식품가공,수산식품가공, 세탁
	소계	47	
산림청	개별자격	2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기술자격	17	임산가공, 산림,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펄프제지, 목재가공, 목질재료
	소계	19	
산업 자원부	개별자격	2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기술자격	79	금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사출금형, 정밀측정, 공업계측제어, 일반기계, 생산기계, 전자, 제품디자인, 포장,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신발류제조, 광산보안, 광산차량기계운전, 광산환경, 보일러,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발송배전, 전기, 전기공사, 전기응용, 내선공사, 외선공사, 열관리, 가스, 굴착,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시추, 석공, 석공예, 계량기계, 계량전기, 계량 물리, 유회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생물공학, 플라스틱성형가공, 광학, 시각디자인
	소계	81	
재정 경제부	개별자격	2	공인회계사, 세무사

〈附表 1〉 계속

구 분	종류	직종	국 가 자 격
정보 통신부	개별자격	3	아마추어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기술자격	30	전파통신, 정보통신, 무선통신, 방송통신, 통신기기, 통신설비,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정보기술,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사무자동화
	소계	33	
중소 기업청	개별자격	3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품질경영진단사
철도청	기술자격	19	철도차량, 전기철도, 철도동력차기관정비, 철도동력차전기정비, 객화차정비, 열차조작, 보선, 철도신호, 철도보선
특허청	개별자격	1	변리사
해양 수산부	개별자격	14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정사, 운항사, 위생관리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해기관리사, 해무사, 항해사, 통신사
	기술자격	20	수산양식, 수산제조, 해양생산관리, 어병, 잠수, 어로, 해양,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소계	34	
행정 자치부	개별자격	2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사
	기술자격	11	위험물관리, 지적, 지적기능, 소방설비
	소계	13	
환경부	기술자격	11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환경
계		714	

〈附表 2〉 職務分野別 國家資格의 種目 및 職種

구 분	종목 및 직종 (개)	국 가 자 격
1. 기 계	121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 금 속	48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3. 의료·보건	27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위생시험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임상병리기사, 작업치료사, 전문의,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수의사
4. 산업응용	41	ISO9000 인증심사원, ISO14000 인증심사원, 국가기술자격 39종목 생략
5. 건 축	34	건축사, 국가기술자격 33종목 생략
6. 해 양	35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정사, 운항사, 위생관리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해기관리사, 해무사, 항해사, 통신사, 어업사, 국가기술자격 20종목 생략
7. 서 비 스	5	전통식품명인, 관광통역안내원, 국내여행안내원, 관광숙박업 지배인,接客종사원
8. 농 림	44	농업사, 임업사, 가축인공수정사,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국가기술자격 39종목 생략
9. 전문사무	23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물류관리사, 경비지도사, 경매사, 사서,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보험계리인, 보험중개인, 손해사정인, 주조사, 행정사, 관세사, 보세사, 변리사, 품질경영진단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10. 토 목	29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11. 섬 유	30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12. 공 예	24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기술자, 국가기술자격 22종목 생략
13. 항 공	18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자가용조종사, 국가기술자격 9종목 생략
14. 에 너 지	13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원자로조정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취급면허, 국가기술자격 6종목 생략

〈附表 2〉 계속

구 분	종목 및 직종 (개)	국 가 자 격
15. 통 신	20	아마추어무선기사, 특수급무선통신사, 특수무선기사, 국가기술자격 17종목 생략
16. 교 육 · 사회복지	12	사서교사, 사회교육전문요원, 실기교사, 양호교사, 전문상담교사, 정교사, 준교사, 사회복지사,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직업훈련교사, 청소년지도사
17. 안전관리	22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 19종목 생략
18. 광업자원	16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19. 화공 및 세라믹	20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0. 전 기	17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1. 조 선	9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2. 환 경	13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3. 교 통	7	교통안전관리자, 강사, 기능검정원, 운전면허, 국가기술자격 3종목 생략
24. 국토개발	12	환지사, 국가기술자격 11종목 생략
25. 전 자	13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6. 정보처리	8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7. 산업디자인	6	생략(모두 국가기술자격임)
28. 사무관리	32	부기, 주산,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영문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29. 음식료품	10	조리, 한식조리, 양식조리, 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제과, 제빵, 조주
30. 위생	3	이용, 미용, 세탁
계	714	